

| 일러두기 |

-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일부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거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인용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서는 본 사례집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I 유아·특수교육

유아교육

1. 등원 제한 시 유아 학습권 보호 요청	3
2. '처음학교로' 선발방법 개선문의	4
3. 유치원 CCTV 설치 관련 문의	5
4. '처음학교로' 선발방법 문의	5
5. 유치원 영양사 전문 인력 단독배치 요청	6
6. 유치원 등원 중지 관련 문의	7
7. 공립 유치원 교사 증원 관련 문의	8
8.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9

전화민원

9.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중 원서접수 가능 여부	10
10.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대상 자격	10
11. 외국인 유아의 '처음학교로' 원서접수 가능 여부	11
12. '처음학교로'에서 우선·일반모집에 동일 유치원 신청 여부	11
13. 고려인 3세 유치원 원아 무료접종 가능 여부	12
14. 유치원 영상정보(CCTV) 열람 관련 문의	13
15. '처음학교로' 일반모집에서의 희망순위 관련 문의	14
16. 조기입학자와 취학유예자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14

특수교육

17. 온라인 개학에 따른 특수학교 지원 강화 요청	15
18.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통합 가능성 문의	16

19.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복무 등 문의	17
20. 특수학급 장애학생 등교수업 기준 확대 요청	18
21. 특수교사 증원 요청	19
22. 코로나-19 관련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요구	20
23. 예술고등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시 요청	22
24. 사회복지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관련 문의	23
25.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담당 문의	24

전화민원

26. 수어교원 자격 기준 및 자격 활용 관련 문의	25
------------------------------------	----

II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1.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자료 문의	29
2.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교육 관련 문의	30
3. 학교에 IT과목 도입 요구	30
4. 초·중등학교 회계교육 실시 요청	31
5. 고등학교 시간표 데이터 개선 및 가이드라인 요청	32
6. 과학교과 진화론 관련 문의	33
7. 미술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변경	34
8. 고등학생 연구 활동지도	34
9.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	35
10.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특기사항 정정 관련 문의	35
11.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문의	36



CONTENTS

12. 취학의무 면제 및 재취학 관련 문의	36
13. 사서교사 배치율 오류 정정 관련 문의	38
14. 교육방송으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안	39
15. 우수한 온라인 수업 공유 문의	40
16. 휴업 관련 장기대책 마련 시 교육 현장과의 소통 요구	41
17. 다자녀가구 고충 해소 요구	42
18.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 실시 관련 문의	43
19. 교육 콘텐츠에 유튜브 사용 관련 문의	44
20. 초등 1,2학년 대상 EBS 교육방송 지속 송출 요청	45
21. EBS 온라인클래스 부적정수강 의심 정보 제공	46
22. EBS 온라인클래스-EBSi 수강목록 연계 필요	47
23. 온라인 개학 시 컴퓨터 사용 미숙 관련 문의	48
24. 미이수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사항 개선 요청	49
25. 원격수업의 불편감 호소 및 건의	50
26. 원격수업에 EBS 교육콘텐츠 활용 건의	52
27.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 필요	53
28. 코로나-19 관련 고3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체제 마련 요청	54
29. 온라인 서적 개발 관련 문의	55



전화민원

30. 재외한국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편입학 절차 문의	56
31. 고위험군학생 출석인정 결석 시 증빙서류 관련 문의	57
32.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 겹친 가족(학생) 등교 여부	58
33. 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선택권 부여 요청	58
34. 9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 정보 관련 문의	59

교육복지

35. 교육부 홈페이지 학력인정 학교 목록 현행화 요청	60
36.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석 수업일 변경 요청	61
37. 고등학교 졸업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문의	61
38. 외국고교 졸업자의 검정고시 응시관련 문의	62
39. 의무교육기관 취학 관련 문의	63
40. 학교 밖 아동 지원금 추가 신청 요청	64
41. 외국 국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요청	65
42. 차량 소유로 인한 교육급여 탈락 관련 문의	66
43.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혜택 적용	67
44.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외학교 없이 시행 필요	67
45.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관련 문의	68

전화민원

46. 외국인 학생의 고교 무상교육 대상 여부	69
47.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문의	69
48.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의 차이	70

학생지원

49. 학교폭력 실태조사 모바일 참여 관련 문의	71
50.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문의	72
51.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대 요청	73
52. 성교육표준안 관련 문의	74
53. 학교 등교 시 방역조치 관련 문의	75



CONTENTS

전화민원

54. 검정고시 응시자격 관련 문의	79
55. 귀국학생 학력인정 관련 문의	80
56.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 열람 방법	80
57. 초등학교 시간강사, 방과후강사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여부	81
58.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련 문의	81

학교제도

59. 사교육 경감 방안 관련 문의	82
60. 특수지 고등학교 관련 문의	83
61. 코로나-19로 인한 수업료 관련 문의	84
62. 코로나-19 관련 9월학기제 도입 건의	85
6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취학학교 변경 관련 문의	86

전화민원

64. 학구(통학구역) 온라인 확인 방법	87
------------------------------	----

교원 인사·복지

65. 교육공무원의 불임·난임 휴직	88
66.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 경력인정	90
67.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후 자유평수휴직 사용	91
68. 교육공무원 자유평수휴직 확대	92
69. 기간제교원의 공무원 여부	93
70. 육아시간 사용월 계산 관련 문의	94
71. 퇴직교원 징계기록 말소 관련 문의	95

72.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96
73. 교육공무원 병가일수 계산 관련 문의	97
74. 교육공무원 겸직 관련 문의	98
75. 교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	99
76.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문의	100



전화민원

77. 국가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도입 관련 문의	101
78. 교원의 경조사휴가 시 휴가일수 산정 관련 문의	102
79. 호봉확정 시 임용 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관련 문의	103



교원자격

80.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 인정 여부	104
81. 강사 경력을 통한 교육실습 면제 여부	106
82.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기준	107
83. 초등교사 자격기준 전공학점	108
84. 전문상담교사 2급의 자격기준관련 문의	109



전화민원

85. 유·초·중등 교원신규임용시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기준	110
86.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시 교육경력 산출 관련 문의	111



CONTENTS

III 교육안전정보



학생안전

- 1. 학교안전법 개정 요구 115
- 2. 무단횡단 교육 실시 요청 116
- 3. 학교 시설 안전관리 기준 관련 문의 116



교육정보

- 4. 나이스 업무관련 건의 117
- 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118
- 6. 교육청별 유·초·중등학교 현황 119



전화민원

- 7. 자가진단 앱 사용자의 로그인 비밀번호 분실 시 조치방법 120
- 8. 전학생의 자가진단 앱 사용 관련 문의 120
- 9. 2020년 기숙형 고등학교 현황 121
- 10. 개별 대학의 학과별 재학생 수 확인 방법 121



교육시설

- 11. 기숙사 1인1실 권고 요청 122
- 1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령 질의 123
- 13.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정기점검 조사양식 간소화 문의 124
- 14. 학교시설안전기준(교실 여담이문 설치 시 유리창 설치) 관련 124
- 15. 건축물 내진설계 및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건의 125

16.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시공 관련 문의	125
17. 학교시설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작성 시점 및 대상 문의	126
18. 학교내진설계 비구조요소와 내화재료에 대한 대책	126
19.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설계 구조해석	127

IV 고등교육

대학 학사·제도

1. 대학원생 사적 업무 강요 및 무보수 노동에 대한 구제방법	131
2. 박사학위 취득 요건	133
3. 외국대학 수료생의 대학 졸업 인정 여부	134
4. 대학마다 졸업 이수학점이 다른 이유	134
5. 대학원생도 대학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135
6. 교사 학술논문 무료 이용 지원	136
7. 2019년 역량강화형 지원 사업에서 정원 감축 사항	137
8. 국가장학금 지원 방법	137
9. 다자녀 가정의 대학 등록금 지원	138
10. 국가장학금 기간 내 미신청자 구제	139
11. 학자금 대출 정보 부모 통지 필요	139
12. 대학 졸업유예 학생에 대한 등록금 부과 가능 여부	140
13. 대학 등록금 고지 시 학생회비 등 통합고지 문제	141
14. 대학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등	142
15.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여부	143
16. 중증장애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감면	143
17. 학자금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	144



CONTENTS

18. 부모 결혼가정 학생 대학 진학 시 등록금 면제 여부	145
19. 코로나-19 관련 ○○사이버대 학사관리 안내	146
20. 동물자원학과가 설치된 사이버대학 현황	147
21. 코로나-19 관련 자녀 지원금 제공 여부	147
22.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제 등록생 학기 연장	148
23. 대학 학과 명칭 변경 가능 여부	148
24.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관련	149
25.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 및 지방거점국립대 지원 확대	150
26. 코러스 복무시스템 개선 요청	151
27. 사립대학 개방형이사 중임	152
28. 사립대학 직장어린이집 지역주민 자녀 이용 가능 여부	152
29. 대학 직원의 겸임교수, 시간강사 가능 여부	153
30. 교원의 법인 사무국장 겸직 가능 여부	153
31. 현장실습 대학생 실습지원비 지급	154
32. 신입생 모집요강 상 입학정원에 계약학과 정원 포함 여부	155
33. 수도권 소재 대학의 타 지역 계약학과 설치 제한 여부	156
34. 산학협력단 정보공개	157
35.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의료기관 현장실습 중단에 따른 실습지원비 환급	157
36. 타 지역 사업소 전근에 따른 계약학과 학업유지 가능 여부	158
37. 조기취업자에 대한 대학 성적 평가기준	158
38. 대학교 명칭 변경 시 출신학교 기재방법	159
39. 간호학과 졸업요건과 학회비 필수 납부 여부	159
40.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졸업자의 학사학위 인정 여부	160
41. 간호학과 현장실습 온라인 대체	161
42. 전문대학 관련 문의(졸업 학점 등)	162

전화민원

43. 코로나-19 대학 대면시험 기준	163
44.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164
45. 폐교 대학의 교육 제 증명 발급	165
46. 의료기관 현장실습 용어	166

대학 인사·복무

47. 대학 교수 휴직 중 논문지도 가능 여부	167
48. 교육공무원 호봉확정 시 복수의 석사학위 경력인정 관련 문의	168
49.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 교원징계위원회 운영 관련	169
50. 국립대학 교육공무원 조교의 복무 관련 문의	170
51. 타 대학 소속 비전임교원의 국립대 강사로 차등 지급 관련 문의	171
52. 강사 재임용 절차에 대한 문의	171
53. 국립대학교 강사로 차별 문의	172
54. 전공대학 졸업 이후, 대학 출강(강사) 가능 여부	172
55. 국립대학에서 임용한 강사를 교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73
56. 대학 강사 임용 시기에 대한 문의	173
57. 강사법에 따른 과목 배정에 대한 문의	174
58. 전문대학교 교원의 연봉 책정에 대한 문의	174
59. 전문대학 전임조교수의 호봉 확정 기준 문의	175
60. 직원의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175
61. 겸임교수의 신분 및 출마 가능 여부	176

대입제도

62.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 관련 문의	177
63.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대한 문의	178



CONTENTS

64. 대입전형료 환불 기준 관련 문의	179
65. 대학별고사 방역 관리 방안 문의	180
66. 현 중학1학년 학생들의 대입제도 전망 문의	180
67. 수능 당일 시험지 회수 건의	181
68. 정시 지원 가능 횟수 조정 건의	182
69. EBS 수능교재 저작권 관리 필요성에 대한 건의	182



전화민원

70. 수시모집에 복수의 대학에 합격 시 예치금 납부 관련 문의	183
71. 대입전형 시 원서접수 취소 기준 문의	184
72. 대입전형 시 원서접수 취소 가능 여부 문의	184
73. 대학입학전형 시 지원방법에서의 유의사항 문의	185
74. 수능시험 당일 신분증 및 수험표 지참 필요에 대한 문의	185
75. 수능시험 응시할 시 신분증 종류에 대한 문의	186
76. 2022학년도 수능시험의 응시영역 및 선택과목 변동 사항 문의	186
77. 대입전형 시 체육특기자 선발방식 개편 관련 문의	187

V

평생교육



평생교육

1. 독서실 교습비 반환기준 관련 문의	191
2. 학원 교습비 반환에 관한 합의 관련 문의	192
3.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제한 관련 문의	192
4. 국립대 강사 학원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193

5. 보습학원 유아대상 교습과정 운영 가능 여부	193
6. 폐업 교습소 직권말소 경우에 대한 문의	194
7. 학원의 등록 가능한 교습과정 문의	195
8. 교습소 교습자 변경 관련 근거 문의	196
9. 학원 강사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196

전화민원

10.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의 평생교육 바우처 잔액 확인 가능 여부	197
11.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결제 금액의 부분 취소 가능 여부	197

직업교육

12.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즉시 대학 진학 가능 여부	198
1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문의	199
14.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의 정의	200

전화민원

15. 취업연계 장려금	201
--------------------	-----

VI 기 타

기 타

1. 미래사회 시스템 개선 관련 문의	205
2. 유사 민원 확인 기능 관련 문의	205



CONTENTS

3.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 건의	206
4. 사회관계장관회의 관련 질의	207
5.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대한 질의	208
6.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	210
7. 교육부 공무원 채용 일정 문의	210
8.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가능 여부 문의	211
9. 동경한국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문의	212
10.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학생 전입학에 대한 학칙 개정 관련 문의	213
11. 학교 가정환경 조사 폐지 건의	213
12. 공공 학습관리 시스템 화상수업 관련 건의	214
13. 교원소청 청구 대상 여부	215
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시험 출제에 대한 문의	216
15. 특수교육 관련 자료 관련 문의	217
16. 행정법 또는 행안부 관련 과목을 K-MOOC 강좌 확대	218
17. 인터넷 연결 건의	218
18. e학습터 내 기능 개선 요청	219
19. EBS 중학 프리미엄 콘텐츠 무료 이용 범위 확대	220
20. EBS 초등 1,2학년 방송프로그램 오후 시간대 편성 요청	221
2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여부 의견 요청	222
22. 원격수업 시 저작권 침해 여부	223
23. e학습터 이용에 따른 기능개선 요청	224
24. 온라인 원격수업 로그인 시간 규정 관련 건의	225
25. 온라인개학 교사 초상권 보호 건의	226



전화민원

- 26. 해외 학력인정 대학 목록 열람 요청 227
- 27.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 시 소지해야 할 비자 종류 질의 228
- 28. 문교부 주관의 주산 자격증 재발급 방법 질의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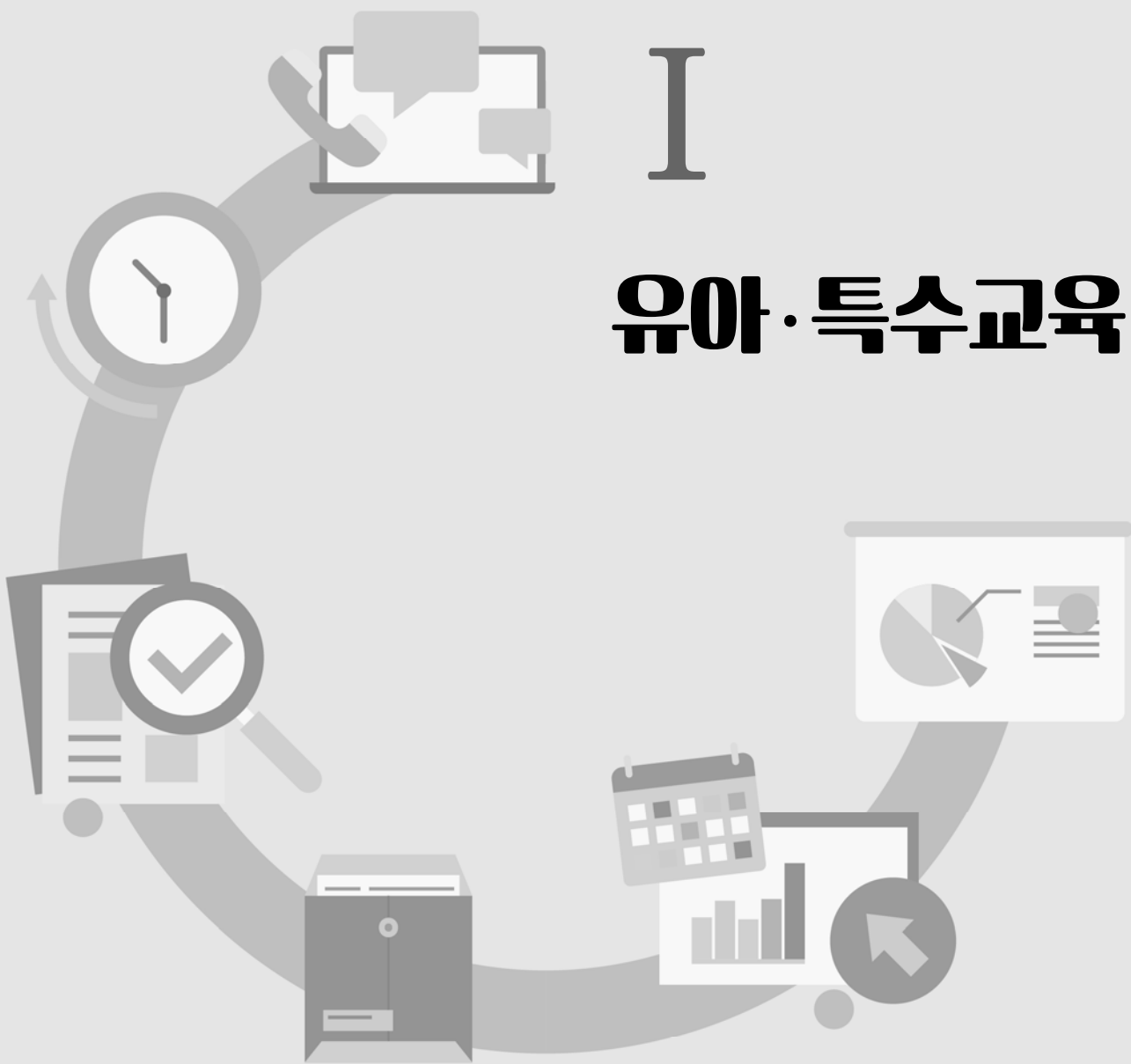
V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233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247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266
- 4.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269
- 5. 적극행정 운영규정 277

I

유아·특수교육



유아교육



1. 정원 제한 시 유아 학습권 보호 요청



질의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정원 제한 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 구분 없이, 유아 학습권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회신

2020-07-28(유아교육정책과)

- 교육부는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원격수업 시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손 및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유아 등의 돌봄 공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EBS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송출, 누리과정 포털(i-nuri) 운영, 놀이꾸러미 배부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원격수업 운영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처음학교로’ 선발방법 개선문의



질의

유치원은 보육이 아닌 교육의 개념이 강하므로 다자녀, 차상위 등에 경제적 지원이 아닌 유치원 입학에 대해 지원하는 우선모집선발 혜택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나요?



회신

2020-12-2(유아교육정책과)

- 「교육기본법」 제18조(의무교육)에서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상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에 대한 모집선발권은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유치원 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시도교육청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 공통적으로 배려 받을 필요가 있는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유아에게는 유아교육 기회보장 차원에서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 등 우선 모집 대상은 각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학부모의 유치원 수요에 부응하고자 국공립 유치원 학급수 등 확충을 통해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음학교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치원 입학관련 공정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더욱 고민하면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유치원 CCTV 설치 관련 문의

 질의 유치원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나요?

 회신 2020-11-30(유아교육정책과)

- 교육부는 「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사업을 통해 유치원 CCTV 설치를 지원하였고, 유치원 CCTV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유치원 유아의 아동학대·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 가능성을 안내해드립니다.

4. ‘처음학교로’ 선발방법 문의

 질의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20-11-03(유아교육정책과)

-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방법, ‘희망순 선발(중복선발제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희망자 선발시 유치원 모집정원이 모두 선발될 경우, 하위희망자(상위희망 유치원에서 미선발된 자)에게는 추첨에 따라 ‘대기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1희망 유치원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학부모님께서 3개 유치원에 모두 지원했을 경우
 - ①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경우) 2/3희망 유치원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 ② (1희망 탈락, 2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경우) 1희망 유치원은 ‘대기번호’가 부여, 3희망 유치원은 추첨에서 제외됩니다.
 - ③ (1/2 희망 탈락, 3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경우) 1/2희망 유치원은 ‘대기번호’가 부여됩니다.

5. 유치원 영양사 전문 인력 단독배치 요청

 질의 유치원 영양사 전문 인력을 단독배치 할 수 없습니까?

 회신 2020-10-13(유아교육정책과)

- 교육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8.12)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통해 유치원 영양(교)사 배치기준 강화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유치원은 현재 5개원까지 허용되는 공동 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원으로 제한하고,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현재 입법 예고 중으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 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유치원 급식을 위해서는 전문적·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교육 담당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귀 단체의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영양(교)사 등의 배치는 예산·재정소요, 유치원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 유치원 등원 중지 관련 문의

 **질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유치원 등원을 중지할 수 없습니까?

 **회신** 2020-09-04(유아교육정책과)

- 최근 수도권 등에서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교육부와 방역당국(질병관리본부 등)의 협의를 통해 수도권은 8.19일부터, 수도권의 지역은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되었습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수도권지역(서울, 경기, 인천)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였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이므로 유초중고 함께 현재 유치원 밀집도 1/3 조치, 수도권 원격수업 전환 등은 유아·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교육부와 방역당국과 협의에 의한 최선의 조치이며 사립유치원도 이러한 조치에 해당되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강화된 밀집도(1/3) 조치나 원격수업 운영시 가정 돌봄이 어렵고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 방과후 과정이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7. 공립 유치원 교사 증원 관련 문의

 질의 2021년 공립유치원 신규 교원 증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20-09-01(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학급마다 교사를 배치하여 학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립유치원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치원 교원 배정기준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 1]에 따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를 비롯해 유치원 등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통해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협력하며, 신증설된 유치원 학급 교원 확보 및 적기 배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질의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신 2020-08-28(유아교육정책과)

-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이며 유치원 교원 자격 취득과 관리는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계법령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초중등 정교사2급(무시험 검정 기준) 취득을 위한 합격기준이 50학점 이상의 전공과목, 22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하고 일정 점수 이상의 성적 기준 등을 충족 시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 하시는 유치원 교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위상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교육부는 유치원이 학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유치원 위상 제고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유치원 예비교원 양성시 교육기관(대학)의 수업 연한 순증 의견 등과 관련, 그간 제도의 발전경과 검토 및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되어 향후 관련 논의 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의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소중히 정책에 답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전화민원



9.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중 원서접수 가능 여부

질의 ‘처음학교로’ 어린이 집에 등록되어 있으면 유치원에 원서접수를 할 수 없습니까?

회신 2020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어린이집 등록과 무관하게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3회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조건에 따라 우선모집, 일반모집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10. ‘처음학교로’ 우선모집 대상 자격

질의 ‘처음학교로’ 온라인 확인 가능한 우선모집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회신 2020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법정 저소득층, 국가보훈, 북한이탈주민 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여부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와 유아 본인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음에도 온라인상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선 해당 자격으로 원서접수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외국인 유아의 ‘처음학교로’ 원서접수 가능 여부



질의

처음학교로 주민번호 없는 외국인도 원서접수가 가능하니까?



회신

2020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외국인 가정의 유아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외국인 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희망 유치원에 접수 가능합니다.



12. ‘처음학교로’에서 우선·일반모집에 동일 유치원 신청 여부



질의

유치원 우선모집 2지망이 되었으나 등록을 안했고 일반모집 자동접수에 체크를 안했다면 일반모집에 동일유치원 지원 가능하니까?



회신

2020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우선모집 등록포기 했더라도 같은 유치원에 일반모집 접수 가능합니다.



13. 고려인 3세 유치원 원아 무료접종 가능 여부



질의

유치원에 고려인 3세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원아들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니까?



회신

2020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연령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유치원 재원 여부는 관계없고, 국적의 문제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 받았으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접종 가능합니다. 외국인번호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는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서만 접종 가능합니다.

14. 유치원 영상정보(CCTV) 열람 관련 문의

 **질의** 유치원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영상 열람을 원하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영상물 열람(존재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열람 요청을 받은 유치원의 장은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와 함께 촬영된 다른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열람은 유치원 내 정해진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유치원의 장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의 요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사전동의, 열람신청서, 영상기록물 저장유무 확인, 열람자 신분확인 기록 등
- 아동학대 등 수사목적으로 경찰관과 함께 온 경우 사전 열람 요청이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합니다.



15. ‘처음학교로’ 일반모집에서의 희망순위 관련 문의



질의

‘처음학교로’ 우선모집에서 일반모집 자동접수에 체크하였습니다. 우선모집 탈락하여 일반모집으로 자동접수 될 때 희망순위가 그대로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모집에서 희망순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우선모집 원서접수 시 일반모집 자동접수를 체크하였어도 해당 유치원이 일반모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동접수를 체크했어도 반드시 일반모집에서 해당 유치원에 원서접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모집에서 일반모집으로 자동접수 시 지원했던 희망순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해당 유치원을 희망하지 않거나 희망순위를 변경하고 싶다면 일반모집 접수기간동안 해당유치원을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16. 조기입학자와 취학유예자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



질의

‘처음학교로’ 조기입학자와 취학유예자가 시스템으로 접수가 가능한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 조기입학자(만2세, 2018년 1.2월생)와 취학유예자(만6세, 14년생)는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방문하여 현장접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기입학자는 만 3세만 허용하고 취학유예자는 자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장이 결정합니다.

특수교육



17. 온라인 개학에 따른 특수학교 지원 강화 요청

질의 온라인 개학에 따른 특수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 및 대안책이 있는지요?

회신 2020-04-20(특수교육정책과)

- 자녀의 등교 개학이 미루어지면서 귀하의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학교가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고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학생들의 감염 위험과 반복된 개학 연기의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단계별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의견처럼 온라인 개학에서 장애학생의 수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교육부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원격수업을 제공하고,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1:1 방문 교육과 학습꾸러미 제공, 교재·교구 대여 등 학교와 학생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특히 1:1 방문교육 시에는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부모의 사전 동의하에 실시할 것과, ‘방문 전-방문 중-방문 후’ 단계별 점검사항을 마련하여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학부모와 교사 등이 주체가 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육지원 방법과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여 학생별 요구사항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러한 조치들은 시도교육청, 학부모, 현장교사 등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통제 가능성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과 교육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장애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통합 가능성 문의



질의

「장애인복지법」 제25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학교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을까요?



회신

2020-05-12(특수교육정책과)

- 각급 학교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두 법률(「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육의 대상이 되는 모든 교직원(근로자 포함)과 학생은 연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급학교의 근로자가 아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두 법률 모두의 교육 대상인 학교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육 시 각각의 법률에 규정된 교육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연 1회 이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복무 등 문의



질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육 교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회신

2020-10-21(특수교육정책과)

- 먼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의거하여 국가공무원에 해당됩니다.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교원의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교육행정기관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사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더불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는 전문 인력은 특수교육교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수교육전문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치료사, 상담사, 복지사 등의 다양한 전문 인력 배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도 복무에 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이에 소속기관의 명령에 따라 상황실 및 당직근무 등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 특수학급 장애학생 등교수업 기준 확대 요청

 **질의** 코로나-19 시대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등교수업 기준을 확대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10-20(특수교육정책과)

- 교육부는 '2020학년도 2학기 특수학교(급) 학사운영 방안(8.19.)'을 통해 특수학급의 경우, 소속 학교의 학사운영을 따르되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밀집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1:1 또는 1:2 학교·가정 방문교육을 병행하도록 하여 특수학급 등교수업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해왔음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현재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10.11.)'을 통해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여 장애학생의 등교수업을 확대·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시도교육청 및 학부모, 방역당국(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장애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1. 특수교사 증원 요청

 **질의** 특수학교 · 학급의 신 · 증설 및 특수교사 법적 정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회신** 2020-09-04(특수교육정책과)

- 교육부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올 해도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에 따라, 특수교육교원 정원은 내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설 계획 등을 고려하여 총 1,214명 증원될 예정입니다. 최종 증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2021년도 최종선발 인원은 증원규모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최종 확정 후 공고할 예정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수교사 정원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 코로나-19 관련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요구

 **질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농(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까?

 **회신** 2020-04-20(특수교육정책과)

〈농(청각장애)대학생 학습지원 관련〉

- 대학생의 학습지원에 대하여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안내하여 대학에서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 학칙 규정, 정보접근 지원, 수어통역, 속기, 점역 등 편의제공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20.3.3.)하였습니다. 특히 원격강의로 인해 장애학생의 수업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요청하였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제32조)하고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제30조)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에서 매년 학생의 수요를 조사하여 학생이 원하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육부에서는 대학이 장애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구, 도우미 지원)”을 2005년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카드뉴스, 배너, 웹포스터,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강화를 통해 많은 대학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신청에 대해서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의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온라인 학습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대하여 귀 단체의 요청에 따라 교수자가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시간 속기, 수어, 자막 등을 지원, 대학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후배간 튜터링 등이 원격으로

이루어질 경우 장애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어 및 전공과목 등 동영상 강의에 전문성 있는 속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 요청('20.3.17.)하였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시행하여 장애대학생 지원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평가를 통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지표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귀 단체에서 요청하신 것과 같이 온라인 수업에서의 정지화면이나 오디오 등은 줄이고, 화면의 다양성을 살려 청각장애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대학에 요청하겠습니다. 농대학생의 이해 증진을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강화 등에 대하여 교육부는 대학 관리자의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 등을 위해 매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 장애대학생과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안내('20.3.3.) 하였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대학 구성원의 내실 있는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귀 단체에서 요청한 마스크 착용 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은 재차('20.3.17., 기안내) 대학에 요청하여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농학생(난청)의 온라인 학습 지원〉

- 교육부는 초·중등 분야의 온라인 학습 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e학습터’ 및 ‘EBS 고교강의’에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으로 자막을 제공하고 있으며, EBS는 올해부터 신규로 제작되는 EBS 초·중 온라인 강의에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자막 서비스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강의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자막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속 노력하여 자막 확대 및 수어통역 지원까지 추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학생(난청 등)이 장애 정도에 적합한 교육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지속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3. 예술고등학교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시 요청

 질의 공·사립 예술고등학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2-13(특수교육정책과)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학교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예술고등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연 2회 이상 확대하여 의무 실시하도록 교육현장에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실화를 위해 장애이해교육 특별기획방송 제작·송출, 수준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보급,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각급학교가 효과성 높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양질의 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4. 사회복지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관련 문의

 질의 서울00학교에서 인근 기관으로 근무지의 재지정이 가능합니까?

 회신 2019-12-11(특수교육정책과)

- 먼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에 따라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입니다.
-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 사회복지요원일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복무기관의 재지정)에 따라 근무기관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교육청과 지방병무청이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본 민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교육청 담당부서(총무과)에 조치 내용을 요청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지방병무청과의 협의를 통해 귀하의 복무기관 또는 근무지를 재지정 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25.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담당 문의

 질의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19-12-23(특수교육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는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단위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등 세부적인 업무 분장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고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되, 교장이 교무를 통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 사무에 관한 업무 분장은 교장의 권한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학교에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은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위 편의시설은 학교의 시설 업무를 담당하여 관리해야 하는 직원이 처리해야할 업무로 판단됩니다. 교육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담당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시·도 담당관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민원



26. 수어교원 자격 기준 및 자격 활용 관련 문의



질의 수어교원 자격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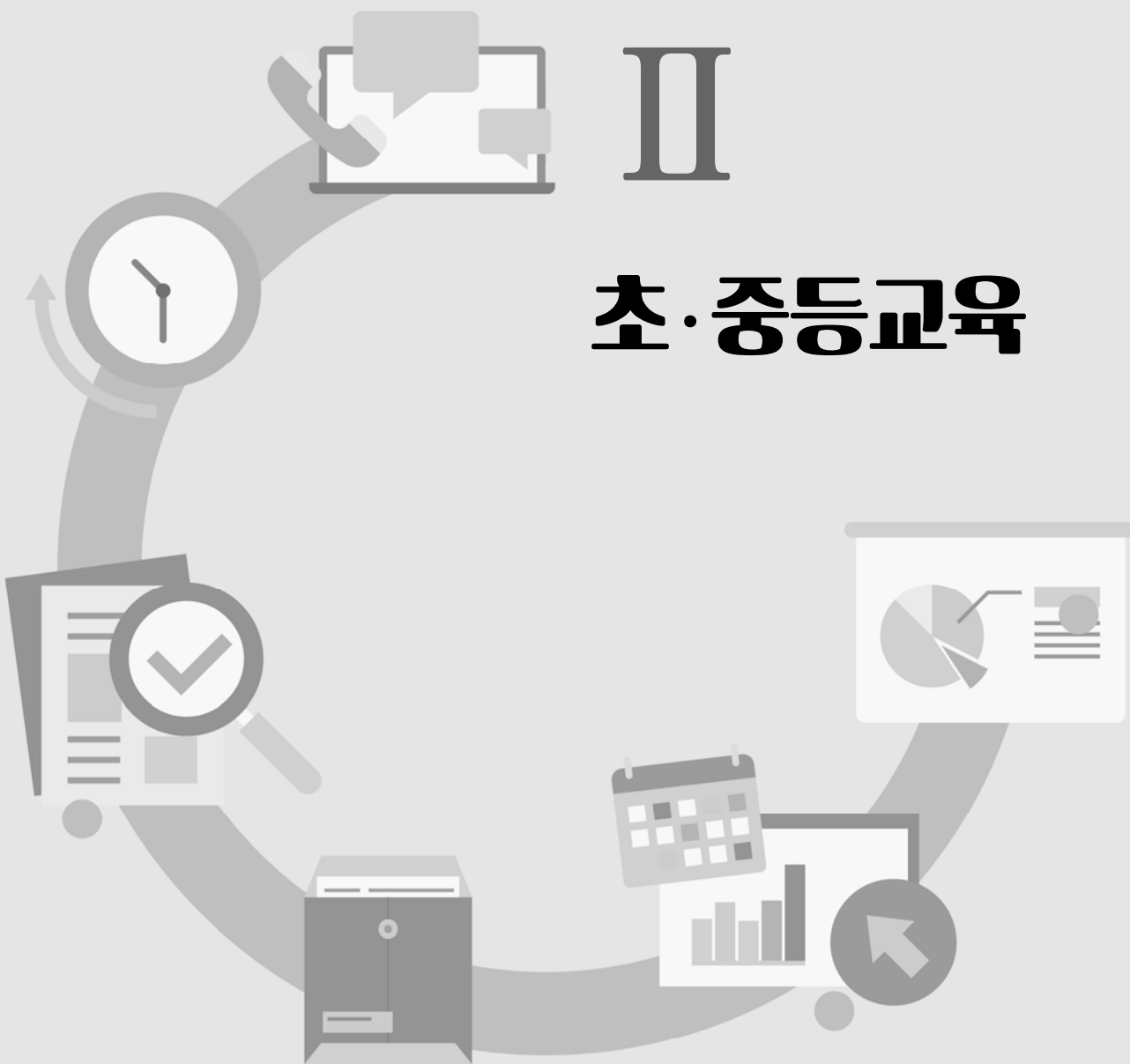


회신 2020년 전화문의(특수교육정책과)

-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어교원 2급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사 신청을 하면 한국수어교원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자격을 부여합니다.
 - ① 한국수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 한국수어교육분야 전공은 수어통역교육학과(또는 전공), 한국수어교원(또는 전공) 등과 같이 학위기의 학과명 또는 전공명에 한국수어교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②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 ③ 한국수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300명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수어교원은 전국의 청각장애특수학교 및 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일반학교에서 방과후교육 등에 필요시 수어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수어교원 자격 및 자격 활용과 관련한 사항은 소관기관인 국립국어원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Ⅱ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1.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자료 문의



질의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자료를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회신

2020-08-27(교육과정정책과)

-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사업은 2003년에 시작되어 2017년에 폐지된 사업이지만 관련 자료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수립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에듀넷티클리어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NCIC)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우수학교 교육과정 보고서는 에듀넷 티클리어(www.edunet.net)-[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과정 우수사례]탭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go.kr>)-[우수학교 교육과정] 탭을 통해서도 자료 확인이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초등 저학년 한글·수학교육 관련 문의



질의

초등학교 저학년 한글과 수학의 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습니까?



회신

2020-10-12(교육과정정책과)

- 2015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한글 등 한글의 기초부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27차시 정도 하던 한글교육 시간을 62차시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등 입학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초등 1~2학년을 비롯한 초등학교 수학 전반에 걸쳐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평가 상의 유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기초·기본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초등 1~2학년에 있어서 충분한 한글교육을 제공하고, 기초적인 수리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습자 수준에 맞춘 학습과 학생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 학교에 IT과목 도입 요구



질의

학교에 IT과목을 도입할 수 있습니까?



회신

2020-09-08(교육과정정책과)

-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가 주도하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하여 초, 중학교에서 정보(SW) 교육을 필수화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정보과목을 일반 선택군에 편성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교과를 통해 정보윤리도 학습하고 있습니다.



4. 초·중등학교 회계교육 실시 요청



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지자체 소속 각 도서관에서 회계에 대한 초급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8-24(교육과정정책과)

- 교육부는 귀하의 제안에 공감을 표합니다. 이에, 2015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통합사회 및 경제 교과에서는 회계와 관련하여 합리적 선택, 자산 및 신용관리,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등에 대하여 실생활과 관련하여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교육 관련 내용의 추가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책연구, 학생의 발달 수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학계, 현장교원, 학부모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5. 고등학교 시간표 데이터 개선 및 가이드라인 요청



질의

고등학교 시간표 데이터 개선 및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수 없습니까?



회신

2020-08-05(교육과정정책과)

- 귀하께서는 ‘학교별로 강의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고등학교 시간표 입력 가이드라인 안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선택에 따른 과목(강의실) 중심으로 시간표 관리 및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동 수업이나 학급(반)이 아닌 특별실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때, 학교 상황에 따라 나이스 ‘강의실관리’ 메뉴에서 ‘강의실명’을 다양하게 입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표의 ‘강의실명’은 학교별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상황이나 특별실 활용 등에 따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입력하는 부분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통일하여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나이스 교육정보 개방포털에서는 현재 강의실, 교시, 수업내용 등을 모두 제공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향후 차세대 나이스 개발 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게 관련 부서와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과학교과 진화론 관련 문의



질의

수업에 진화론과 관련된 영상(다큐멘터리 등)의 일부를 보여줘도 되는지요?



회신

2020-07-22(교육과정정책과)

- 교육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사가 교육이론에 근거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 방식을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따르면,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의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과학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10통과07-02]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항생제나 살충제에 대한 내성 세균의 출현을 추론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일반화된 지식’인 ‘생물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진화한다.’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두고 선생님께서 자율적으로 수업을 설계하시면 됩니다.



7. 미술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변경



질의 미술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6-02(교육과정정책과)

-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미술’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문화적인 소양 함양을 위해 고등학교에서는 예술 교과군(음악, 미술, 연극)의 필수 이수 단위(일반고 및 특수목적고 10단위,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 6단위)를 정하여 과목에 상관없이 3년 동안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시에 귀하의 의견과 관련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 고등학생 연구 활동지도



질의 고등학생 연구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회신 2020-05-04(교육과정정책과)

- 교육부에서는 고등학생의 연구 활동을 관리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연구(탐구) 활동 지도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유탐구 지도 가이드’를 안내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사이언스올(<http://www.scienceall.com>)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으며, 연구(탐구) 활동의 이해, 단계별 지도 방법(주제선정, 문헌 및 이론 연구, 탐구 설계, 탐구 수행),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지도 등 연구(탐구) 활동 전반에 걸친 지도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9.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수업시수 조정

질의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수업시수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3-22(교육과정정책과)

- 교육부에서는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운영과 관련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 휴업에 따른 초·중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안>(시행일 2020.3.23.)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으로 안내 하였습니다. 학교는 교육부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및 시도교육청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수업시수의 감축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특기사항 정정 관련 문의

질의 이전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특기사항 정정이 가능한지요?

회신 2020-09-07(교수학습평가과)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343호) 제19조에 따라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객관적 증빙자료: 해당 증빙 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를 의미



11.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문의



질의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에 해당하는 사유와 최대 허용일수는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회신

2020-09-15(교수학습평가과)

- 체험학습 관련 운영은 2018학년도부터 ‘유·초·중등교육 지방이양’ 추진에 따라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은 시도교육청 소관으로 최대 허용일수는 교육감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업 인정 등 해당 사유는 학교장 권한으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12. 취학의무 면제 및 재취학 관련 문의



질의

부모의 공무상 해외파견으로 인해 자녀가 의무 교육 면제 대상이 될 경우

1. 귀국 전 면제 신청을 위해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2. 현지 외국 학교에 재학하다가 추후 귀국할 때 국내 원적교에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3. 국내 재취학 시 학년 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20-11-02(교수학습평가과)

-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및 해설은 교육부훈령 제348호를 따르고 있고, 학적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해서는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따르고 있으나, 초·중·고등학생의 재취학,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및 「교육부 훈령」 제348호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출국 전 의무교육면제 신청을 위해 학교에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자녀의 경우와 같이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여 재취학 할 때 해당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는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인적·학적사항의 '귀국학생 등의 학적 처리 방법'에 안내된 제출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합니다. 이 때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하되,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합니다. 또한,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재취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하게 됩니다.

13. 사서교사 배치율 오류 정정 관련 문의



질의

「학교도서관진흥법」상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부가 발표한('20.7.) 사서교사 배치율(38.7%)은 오류입니다. 이를 정정하여 줄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8-05(민주시민교육과)

- 귀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정 정원 확보 현황은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17.10.) 상의 “교사 확보율”에 따른 개념으로, 동 로드맵은 “사서교사 확보율”을 당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의 사서교사 등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의 정원인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해당 설명자료는 “사서교사 확보 현황”을 38.7%로 설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동 시행령 제7조는 사서교사 뿐만 아니라 실기교사, 사서까지 포함하여 학교당 1명 이상으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 정원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의 법정 정원은 2020년 3월 1일 기준 국립학교 9명, 공립학교 1,158명입니다.
-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19.3.)을 통해 2030년까지 학교도서관 수 대비 약 50%까지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추진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에 따른 학교도서관 수 대비 사서교사의 배치율은 현재 약 11%로 민원인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교육부는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2]의 사서교사 총정원을 매년 확대하여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4. 교육방송으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안



질의

교육방송으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3-19(이러닝과)

-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들의 가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보유한 TV와 인터넷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 EBS의 라이브 생방송, EBS 어린이프로그램 방송 편성, EBS 인터넷서비스 EBS초등, EBS 중학, EBS고교, EBS영어, EBS수학 등을 활용하도록 각 급 학교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가정에서 알찬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 우수한 온라인 수업 공유 문의



질의

교육격차를 느끼고 있는 지방의 학생들, 교육소외계층과 저희학교의 우수한 교육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

2020-07-20(이러닝과)

- 교육부에서는 안정적인 원격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학교현장의 우수한 자료가 원격수업에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 교사가 함께 사용하는 학습자료 통합관리누리집 “학교온” 등에 공유하거나,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겠습니다.
- 또한,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원격수업 형태와 블렌디드러닝, 플립러닝 등 교수학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LMS 플랫폼(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장기적으로는 민간/공공의 에듀테크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모아서 사용자가 한곳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 휴업 관련 장기대책 마련 시 교육 현장과의 소통 요구



질의

휴업 관련 교육부의 대응과 관련하여 교육주체, 특히 교육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채로 매번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원들은 충분히 이 위기를 극복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소통해주실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4-17(원격교육준비점검팀)

-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한 번에 완벽히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 원격수업 준비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현황을 취합하는데 있어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온라인 개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되는 개학 연기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플랫폼 지원을 위하여 EBS 온라인 클래스 및 e학습터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온라인 학급방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격수업에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지원을 위하여 EBS와 연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방송서비스를 확대하고, 학년별 교과 학습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 중입니다.
- 교육부는 원격수업 도입을 위하여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등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안내하였으며(3.26.), 학교에서 참고할 '원격교육 실무 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3.31.),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 라인'을 안내하여(4.7.) 학교의 원격수업 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7. 다자녀가구 고충 해소 요구



질의

현재 아이들 넷이 온라인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뿐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해선 아무 대책도 없는지 고민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요?



회신

2020-04-21(원격교육준비점검팀)

-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한 번에 완벽히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운영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교육부는 학교가 처음 준비하는 원격수업 사전 준비를 위하여 ‘원격교육 실무 가이드’를 보급한 바 있으며, 학교는 원격수업 준비 단계에서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 내용, 스마트기기 대여, 대체학습프로그램 등을 학교홈페이지와 학부모와의 연락망을 통해 사전 안내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원격수업에 따른 수업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온라인 콘텐츠 활용 중심의 수업, 과제 수행 중심의 수업 등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학교나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 실시 관련 문의



질의

한국 교육의 기반을 뿌리부터 바꾸어가려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며, 올해가 교육혁명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요?



회신

2020-04-21(원격교육준비점검팀)

-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 운영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교육부는 등교개학의 결정 기준으로 최근 확진자 현황과 감염증 통제 가능성, 학교의 개학준비도, 대입에서 지역 간 형평성, 개학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여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등교 개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신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하고자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향후 지역별 감염증의 진행 상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원격수업과 출석수업의 병행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여, 모든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한 번에 완벽히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개척해 나갈 것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19. 교육 콘텐츠에 유튜브 사용 관련 문의



질의

저희는 교육상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열어놓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유튜브 접근을 막기 위해 노력중입니다만, 정작 학교에서 배부한 교재 큐알코드로 연결된 동영상은 유튜브로 연계됩니다. 교육부에서 반드시 별도의 동영상 저장소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유튜브를 통하지 않고 교육 자료를 시청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5-29(원격교육준비점검팀)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의 원격수업 도입을 위한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등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안내하였습니다(3.26.). 본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 유형은 1) 실시간 쌍방향 수업, 2)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3) 과제 수행 중심 수업, 4)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 등이 있습니다.
- 또한 다양한 원격수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유튜브만이 아닌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학교에서 주로 활용하고 계시는 플랫폼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학습터'와 EBS의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 한편, 귀하께서 말씀하신 유튜브의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원격 수업 관련 정보보안·보호 가이드를 안내하였으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형 원격교육 전략을 수립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20. 초등 1,2학년 대상 EBS 교육방송 지속 송출 요청



질의

교육부 및 교육청이 초등학교의 경우 원격 및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권고된 상황에서 초 1·2학년 대상 EBS 프로그램 지원은 5월 29일로 종료를 예정하고 있어 연장돼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초 1·2학년 대상 EBS 방송 프로그램 편성’에 대하여 본회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EBS와의 협의 과정에서 프로그램 편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5-20(이러닝과)

-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이 쉽지 않은 초등 1,2학년의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서 기반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 등교수업 이후에도 일부 학교의 원격수업 병행이 예상되며, 코로나-19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처리가 가능함(교수 학습평가과-2760, '20.5.7)에 따라, 초등 저학년의 가정 학습이 예상되는 바 교과관련(국어, 수학,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 교과서 기반 방송 콘텐츠를 계속하여 송출할 예정입니다.

21. EBS 온라인클래스 부정정수강 의심 정보 제공



질의

온라인 수업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이점들이 있겠지만, 현재 이렇게 불안정한 서버와 정확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인한 부정수강 의심 등은 입시가 벌어지고 있는 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회신

2020-05-15(이러닝과)

-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EBS 온라인클래스’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가상 수업 공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출결 및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관리는 교육기관의 당연한 업무로, 학생 출결 및 진도율에 대한 정보제공은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학사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억울한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코드조작’ 등 명백히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강을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만 ‘적정 수강 확인 필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0.~). 이에 따라 말씀하신 ‘강의 시청 중 강의를 정지시키는 행위’는 부정정수강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적정 수강 확인 필요’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 선생님들께서 강의 내용 질의 등을 통해 해당 학생의 수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2. EBS 온라인클래스-EBSi 수강목록 연계 필요



질의

고3 온라인 개학에 따라 온라인클래스를 이용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단위 학교에서는 온라인클래스에 EBSi 강의를 대체강의로 올려두면서 학생들은 이미 수강한 강좌를 재수강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클래스와 EBSi와의 연계를 통해 이미 수강한 강좌를 재수강토록 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4-23(이러닝과)

-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개학에 따라 초, 중, 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EBS온라인클래스 등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교의 담임교사(또는 교과교사)가 학생의 학습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원격수업 플랫폼인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를 통해 온라인 학급을 개설해 일일 학습 내용을 제공하고, 과제제출 및 피드백이 가능하며,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영상을 올려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의주신 사항 관련하여, 온라인 개학의 경우 정식 수업 일수에 포함되는 부분이기에, 온라인 개학 이전의 학습이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3. 온라인 개학 시 컴퓨터 사용 미숙 관련 문의



질의

원격수업을 할 때 컴퓨터로 EBS 들어가서 설정하고 회원가입하고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실수로 출석이나 수업을 똑바로 듣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회신

2020-04-09(이러닝과)

- 교육부는 초, 중, 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EBS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등 EBS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EBS 메인(www.ebs.co.kr) 화면에 탑재되어 있는 ‘매뉴얼’과 ‘매뉴얼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선생님들께서 EBS 방송을 활용하여 원격 수업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학년별로 채널을 편성하여 출석 개학 전까지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채널 편성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 미이수 교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사항 개선 요청



질의

현행 전/편입 및 각 대학입시 선발요강 내, 일부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최저이수 기준’으로 사회 교과 중 0과목 00단위 이수 가산점 또는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2021학년도 특목대(00사관학교)입시요강의 경우에는 부족한 과목에 대한 “등급 평가”에 따른 각급 간 점수가 배정되어 입학선발의 기준이 되고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 교육부 온라인 수업시 평가제도에서는 원점수, 표준편차, 이수여부 정도만 표시되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학생의 기본인권 평준화 차원에서 동등한 조건을 바탕으로 입시요강이 변경되든지, 교육부 제도가 온라인 과목수업 이수시 등급평가를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3-27(이러닝과)

- 2020년 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전입학 및 귀국 등으로 중학교의 특정 교과목 또는 고등학교의 공통과목(2015 개정 교육과정에 한함)을 이수하지 못하여 온라인수업으로 “보충 학습 과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명, 이수기간, 이수시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상으로는 미이수 과목의 등급평가 기재가 어렵습니다.
- 이것은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수업의 경우 전편입학 등으로 발생한 미이수 교과의 학습권을 보장하여 진급 및 졸업에 있어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고, 교원 수급 문제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개설 교과와 관련된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보충적으로 보장함에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비면대면, 비실시간 교수·학습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과 교실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아직은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 등에 교육전문가들의 합의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은 정책적으로 미이수 과목의 등급평가 기재가 시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25. 원격수업의 불편감 호소 및 건의



질의

원격수업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학습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비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2020년 2학기 수업 선택지에 전일 오프라인 수업참여의 선택지를 의무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업 중에 생존수영 등의 수업은 사전 합의 없이 폐강하는 등, 커리큘럼 제한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소통하는 앱이 너무 많아 통합앱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서 1학기에 너무 코로나-19 정상에 대한 조사만 강조하고 있으므로, 초등교사가 고유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2학기부터는 업무분장을 제대로 규정하여 학교에 공지해 줄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8-24(이러닝과)

- 다양한 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양질의 콘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제공 방식에 눈높이에 맞는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 초등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불편함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관심을 갖고 이용 편리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초등 저학년을 위한 콘텐츠 확충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등교수업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였으며,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 방법은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향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촘촘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역별 감염증의 진행 상황과 역학 조사 결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등교수업의 방법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7월 3일 초등 생존수영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초등 생존수영 실시 여부에 대하여 감염병 전문의, 교원, 학계 및 교육청 담당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학부모 불안감, 교육과정의 어려움, 교원의 업무 과중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생존수영 실기 교육은 이론 교육으로 대체하고 자체 수영장과 이동식 수영장 등을 활용하여 실기교육이 가능한 학교는 자체 판단하여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코로나-19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 하에서 학생 및 교사의 안전과 방역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격 도입한 원격수업을 위하여, 각 교과별 학년별 교사별 최적의 원격수업 도구를 활용하여 원격교육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교과의 특성에 맞는 수업도구의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위 학교에서 교사가 사용 가능한 수업도구(가정통신문 기능, 콘텐츠 활용기능 등을 모두 포함)를 1개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관리지침을 통해 학교 내 방역담당자를 복수로 지정하고 감염예방 활동을 총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임신부, 기저질환보유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담당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상반기 중 방역인력을 약 4만여 명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학교 내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하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해당 학교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6. 원격수업에 EBS 교육콘텐츠 활용 건의



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초·중·고 학생들의 원격수업에 EBS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3-19(이러닝과)

-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들의 가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보유한 TV와 인터넷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 EBS의 라이브 생방송, EBS 어린이프로그램 방송 편성, EBS 인터넷서비스 EBS초등, EBS 중학, EBS고교, EBS영어, EBS수학 등을 활용하도록 각급학교에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가정에서 알찬 시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 필요

 **질의** 개학 연기하면서 생기는 학습공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3-25(이러닝과)

-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따라 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 및 피드백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가정학습 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고등학생의 학습 지원을 위하여 EBS와 함께 생방송 2주 라이브 특강을 운영하여 현직 교사가 매일 5개 교과(국, 수, 사, 과, 영) 수업을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20,000여 편의 동영상 강의를 EBS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교사가 휴업 기간에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EBS 온라인 클래스, 위두랑, 카카오톡 등의 온라인 학급방 및 소통 기능이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관리 및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들에 대한 촘촘한 학습 지원으로 학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학생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 코로나-19 관련 고3 학생을 위한 원격수업 체제 마련 요청



질의

고3 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개설해서 각 과목을 이수하고 수업 일수도 대체했으면 합니다. 개학 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요?



회신

2020-03-18(이러닝과)

-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연기에 따라 초, 중, 고등학생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에게 연습과제 및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가정학습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9. 온라인 서적 개발 관련 문의



질의

요즘 아이들이 격주로 학교를 가서 책가방에 다 책을 넣어 가져오는데 중1 학생의 책가방이 너무 무거워 놀랐습니다. 온라인 서적을 좀 더 발달시킬 수 있습니까?



회신

2020-07-02(이러닝과)

-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 및 학습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서책형 교과서를 기반으로 초3~중3학년 대상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사회, 과학, 영어 교과서를 디지털교과서로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6(월)부터 디지털교과서 웹뷰어(webdt.edunet.net)를 통해 교과서 파일(e-book)을 탑재하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20.3.13, 시도교육청 안내) 또한, 코로나로 인한 원격수업 실시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교과서 PDF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출판사 측에 요청하였으며, 무상 제공에 동의한 출판사의 경우 출판사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서 PDF파일을 받아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20.4.13, 시도교육청 안내). 앞으로도 민원인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서적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민원



30. 재외한국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편입학 절차 문의



질의

재외한국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출·입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 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한국학교와 전출·입의 경우 국내학교 전출·입 방법과 동일합니다. 교육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학교와의 전출·입 절차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국내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입 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함.
- ②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등록]에서 전입생으로 등록함
- ③ 재외한국학교에서 받은 전학서류(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재학증명서 등)를 참고하여 이전 학년도 학생자료를 [학적]-[기본학적관리]-[추가입학/입력누락자 자료입력]에서 입력합니다.

※ 한국학교에서는 전학서류 발급 시 한국학교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고, 학부모는 귀국 후 한국학교에서 발급 받은 서류를 국내학교에 제출

31. 고위험군학생 출석인정 결석 시 증빙서류 관련 문의



질의

호흡기 질환으로 장애복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출석인정 결석 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2020. 8) 중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참고1] 참조)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 (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없이 이 카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32.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 겹친 가족(학생) 등교 여부

질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가족이 자가격리자가 되었을 경우 학생의 등교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3판)’에 따라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도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합니다.

33. 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선택권 부여 요청

질의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 간접선택권은 고위험군에 대한 학생에 대해서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위험하다고 하면 결석기간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오지 말라”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체험활동 통해 간접선택권을 드리고 원격수업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학교운영 여건에 따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34. 9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 정보 관련 문의



질의

9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과서정책과)

- 교과서 민원바로처리 센터(1566-8572)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복지



35. 교육부 홈페이지 학력인정 학교 목록 현행화 요청



질의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 학교 목록에 자녀가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소재 학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학교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 간소화를 위해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 인정 학교 목록에 해당 학교를 추가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3-19(교육기획보장과)

- 교육부에서는 ‘귀국학생 등의 학적 서류 처리 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라 외국 현지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 목록을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 안내하고 있으며, 목록에 포함된 학교에 대해 국내 학교 편입학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 절차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 해당 목록에 포함된 학교는 외국 현지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 중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학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교 목록 추가를 희망하실 경우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해당 학교의 목록 추가를 요청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6.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석 수업일 변경 요청



질의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토요일에 수업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6-17(교육기획보장과)

-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운영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석수업일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출석수업일은 해당학교가 부설되어 있는 학교의 시설 공유, 교원의 수급 등을 고려하고 재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결정하고 있어 모든 학생이 원하는 요일에 출석수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7. 고등학교 졸업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문의



질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6-09(교육기획보장과)

-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도교육청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8. 외국고교 졸업자의 검정고시 응시관련 문의

질의 국내고교 자퇴 후 외국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국내 고졸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까?

회신 2020-01-13(교육기획보장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①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중인 사람
- ② 고등학교 또는 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로부터 제32조제3항에 다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중략)~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 이때 영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란 「학력인정학교 지정규칙」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한 학력인정학교를 말하며, 외국의 고등학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고졸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외국 고교 졸업자의 경우 국내외 정규학교 재학기간이 12년이 충족될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국내 고졸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할 경우 국내고등학교 자퇴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대입전형과 관련한 사항은 지원하신 대학교 입학처 또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문의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39. 의무교육기관 취학 관련 문의



질의

의무교육기관 취학 방법과 절차가 어떠한지요?



회신

2020-08-25(교육복지정책과)

-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 따라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해 취학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과태료)에 따라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의무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기관에 취학하여야 하며,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에 따라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에 따라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0. 학교 밖 아동 지원금 추가 신청 요청



질의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추가 신청 부탁드립니다.



회신

2020-11-03(교육복지정책과)

-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최대한 많은 가정을 지원하고자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의 추가 신청·접수를 2020.11.3.(화)부터 11.13.(금)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전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지원금 신청 대상 자격 유무,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주변에 학교 밖 아동 수당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 외국 국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요청



질의

외국 국적의 중학생에게도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해주세요.



회신

2020-10-12(교육복지정책과)

-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비대면 학습 지원금)은 기존의 아동수당을 일시적으로 초·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의 성격을 가져 「아동수당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아동수당 및 제1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중 만 6세 이하의 아동특별돌봄지원도 동일하게 지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외국 국적 아동까지 지급 가능함을 안내한 바 있으니 지역의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지원 여부 및 가능성은 교육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2. 차량 소유로 인한 교육급여 탈락 관련 문의

 **질의** 2007년식 그랜저 2.7차량 구매로 인하여 교육급여를 받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20-06-05(교육복지정책과)

-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동일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수급자 선정할 때는 차량 뿐 아니라 재산,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2000CC이상 승용차량)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라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동차 등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한편,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제도’는 차령 6년 이상인 차량 등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4.17%/3을 적용하는 등 교육급여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혜택 적용



질의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 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5-19(교육복지정책과)

- 교육부에서는 교육비 부담을 완화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19년 2학기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으로, 한정된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2학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 학년

- 다만, 현재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학교의 소관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외학교 없이 시행 필요



질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제외학교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2-13(교육복지정책과)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정부·교육청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됨이 원칙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대상이 아니며, 이것은 사립 초등학교와 사립 특성화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경우 법적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징수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45.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관련 문의



질의

학교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신

2020-08-05(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

- 현 정부에서는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 그간 정부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공급해 오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지자체-학교 협력모델을 새롭게 도입하여 돌봄서비스 수혜인원을 확대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말씀하신 바와 같은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화민원



46. 외국인 학생의 고교 무상교육 대상 여부

질의 2021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가 됩니다.(일부학교 제외) 무상교육 대상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 무상교육 지원 대상 학교에 해당하면 가능하며, 무상교육의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의 국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47.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문의

질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의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 국내 중학교 2, 3학년 및 고교 1, 2, 3학년 재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가정 혹은 긴급구난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단,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 긴급구난사유 : '20년 1월 1일 이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48.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의 차이



질의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권리성 급여),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 (재량적 예산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생지원



49. 학교폭력 실태조사 모바일 참여 관련 문의



질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모바일 기기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9-29(학교생활문화과)

-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NEIS에 등록된 학생의 학적 정보를 사용하여 진행되고, 실태조사 진행상황, 조사결과 통계 등이 NEIS 시스템과 연동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현재는 컴퓨터 환경에서만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교현장에서 모바일 기기로 실태조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보안성을 확보하고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모바일기기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21년 실태조사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0.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문의

 **질의** 가해학생 조치인 학급교체(법 제17조2 제2항 제7호)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회신** 2020-06-18(학교생활문화과)

- 「2020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p.70)」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의 학급교체’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 한편, 「2020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p.66)」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로서의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의 학급교체’는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로서의 학급교체’와 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1.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대 요청



질의

위기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8-06(학교생활문화과)

-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단위학교에 배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매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립 학교 교사 정원 1차 가배정 계획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17. 10월,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관계부처(행안부 등)와의 협의를 거쳐 증원 규모가 결정되는 바, 다음 연도의 증원 규모가 미확정된 상황에서 해당 연도의 증원 규모를 기준으로 정원의 일부(30%)를 우선 가배정하고, 향후 행정안전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관계부처(행안부 등)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매년 전문상담교사의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 성교육표준안 관련 문의



질의

성교육표준안 열람 방법과 개정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20-04-23(학생건강정책과)

- 우선, '학교 성교육 표준안' 자료 열람은 학생건강정보센터(<http://www.schoolhealth.kr>)에서 다운로드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또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가치관과 성태도 확립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초·중·고등학생 발달특성에 맞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15.2.) 하였습니다. 이후 남녀차별적인 요소 등 일부 진술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아닌 교육 자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니다. 교육 자료는 여성정책연구원의 검토 등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모두 수정 후 '17년에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였고 학교에서는 현장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53. 학교 등교 시 방역조치 관련 문의



질의

등교수업 시 학교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20-05-25(학생건강정책과)

- 교육부는 지난 3월 24일 발표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을 등교수업을 대비해 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 제2판」을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에 안내 하였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이 포함된 등교수업 이후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중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및 교직원 건강상태

- 등교 전부터 가정 내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의 의심 증상 여부 및 본인과 동거인의 해외 여행력 등의 정보를 학교와 공유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 하여,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도록 적극 안내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등교 시에도 교실 입실 전, 일과 중 발열체크(1일 최소 2회) 및 매 수업 시작 전 질문을 통한 증상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의심증상자를 관리할 예정이며 의심증상자 발견 시, 별도 공간으로 이동해 보호자 연락 후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일 검사결과 음성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가 호전 될 때까지 출근 및 등교를 중지토록 하며 등교중지 기간 동안 관리자가 매일 유선으로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교실 환경

〈환기〉

- 기상상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교실 출입문 및 창문을 상시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교육자료 포스터 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환기의 중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 기온상승으로 불가피 할 경우 냉방기기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1/3 이상을 열어둔 채로 가동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소독〉

- 등교 수업 전 전문 소독업체를 통한 학교 전체소독을 완료하고 등교 후 손잡이, 난간,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수도꼭지 등 접촉이 빈번한 곳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번이상 소독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올바른 소독 방법 및 사용 가능 소독제 등에 대해서도 학교 소독지침에 포함해 안내하였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 책상재배치, 물품공동사용 금지, 단체 줄서기 등 대기 시 충분한 거리확보 및 대화자제 지도, 이동수업 금지, 쉬는 시간 분리 등 다양하게 제시된 방법을 학교현장에 맞게 적용하여 개인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급식운영

- 학교 급식운영에 대해서는 대체식, 개인도시락, 교실배식, 식당배식 유지 등 다양한 방안 중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별 급식여건 및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급식시설에 관해서는 급식 개시 이전에 급식소는 전체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시설 기구 등은 매일 청소·소독할 예정입니다. 또한 급식실을 이용할 경우 식당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식사 전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배식 및 식사 중에는 대화를 삼가고 대기 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급식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일 2회 이상 발열 및 의심 증상을 확인할 예정이며 위생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하여 오염이 방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방역물품비축

- 마스크, 손소독제,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물품 확보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국내 마스크 보급상황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스크 공적물량을 우선 공급 받아 확보 완료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1인당 2매씩 면마스크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역물품 비축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마스크 착용 기준

-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것을 권고하며 마스크 착용 중 이상반응(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를 벗고 증상이 완화되면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되,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귀가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확진자 발생시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귀가조치 후 해당학교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등교 대상 및 시기 등을 결정

□ 기숙사 등 시설관리

- 1일 통학 가능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가급적 기숙사 이용 자제를 권고하며 기숙사 운영 전 입소학생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가능한 1인 1실을 사용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어려울 경우 침대간 거리 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숙사 입소생을 대상으로 한 발열검사를 매일 2회 추가로 실시하여 건강상태 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고 보호자 등 방문자의 숙소출입 역시 제한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할 예정입니다.

〈입소자 중 의심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시〉

- 의심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킨 후 증상을 재확인 한 후 보호자에 연락하여 선별진료소 진료·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의심 증상 학생이 검사를 받게 된 경우 모든 기숙사 입소학생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숙사에 대기 조치할 예정이며, 만약 검사결과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확진환자 이용 장소는 소독 및 이용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하고 기숙사 입소생들의 거취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될 예정입니다.
- 동 지침은 기본가이드라인으로서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및 코로나-19 관련 관계부처의 각종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교육부와 보건당국이 협의하여 구성한 내용으로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구분 적용됨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지침의 전체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 탑재 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54. 검정고시 응시자격 관련 문의



질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없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육기회보장과)

- 현재 검정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35조(응시자격)에 의거, 정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그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정고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학력취득 기회 제공을 위한 예외적, 보충적 성격의 학력인정제도이기 때문입니다.



55. 귀국학생 학력인정 관련 문의



질의

중학교 교사입니다. 외국인인 중학생이 외국의 중학교를 다니다가 국내 정규 중학교에 전편입학을 할 경우에도 외국에서 재학 중인 학교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는 '외국소재 학력인정 학교목록'에 있는 학교라면 학적서류간소화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육기회보장과)

- 네, 그렇습니다. 귀국 학생의 학적서류(전·편입학 등)란 귀국학생이 국내 전·편입학시 각종 구비서류에 있어 교육부가 확인한 외국소재 학력인정 학교(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또는 영사 확인)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외국인인 중학생이 외국의 중학교를 다니다가 국내 학교로 전편입학을 하게 될 경우에도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는 외국소재 학력인정 학교목록에 있는 학교를 다녔다면 학적서류 간소화 절차에 따라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공증을 면제받게 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귀국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학생 등을 의미합니다.



56.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 열람 방법



질의

학교 보건 급식 기본방향이 2011년도 자료까지만 있는데 최신자료는 없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학생건강정책과)

- 학생건강정보센터 공지사항에 학생건강증진 정책방향으로 제목이 바뀌어 탑재되어 있습니다.

57. 초등학교 시간강사, 방과후강사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여부

질의 초등학교입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시간 강사나 방과후강사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학생건강정책과)

-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 제2제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9에 따라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교직원의 범위는,
 1. 모든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2. 학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 강사 등 학교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사람
 3.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
- 그 밖의 교직원(시간강사 등 단기상주 직원 포함)에 대한 교육실시여부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장이 해당 교직원의 학생 교육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58.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련 문의

질의 아이가 예방접종 부작용이 심해 예방접종 하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예방접종 서류를 내야 하는데 부작용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하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학생건강정책과)

-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백신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제도



59. 사교육 경감 방안 관련 문의



질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요?



회신

2020-03-17(학교정책과)

-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인 대책은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는 원칙으로,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첫째, 공교육 내실화 및 방과후 활동 강화입니다. ‘영어교육 내실화 계획’의 현장 안착을 통해 교과 사교육 중 큰 규모를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을 경감하고, 보충학습 수요가 많은 수학은 EBS 사이트를 통해 기초부터 탐구활동까지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공합니다. 초등단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수요 감축을 위해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지역사회·마을교육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사회변화 및 학생 요구에 부합하는 교과 및 예체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둘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학생부,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개선 ② 논술 및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하여 학생부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 단순화 ③ 정규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평가·학생부 기재 기반 조성 등이 있습니다.
- 셋째,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시도교육청 자체점검을 통해 학원 등의 교습비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편·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도시 지역의 진학상담·지도 컨설팅 학원에 대한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상한가)을 마련하여 학원비 인상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60. 특수지 고등학교 관련 문의

질의 특수지 고등학교의 근거 법령 및 시도별 상황과 특수지 고등학교에 발령이 나서 재직하는 교사들은 어떤 교사들인지요?

회신 2020-11-26(학교정책과)

- 가. (근거법령 등) 특수지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따라,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지만 통학이 극히 불편하거나 추첨 배정이 곤란하여 학교장이 선발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현재 특수지 고등학교를 지정하는 시도교육청은 인천, 광주, 충남, 경북이며, 해당 학교 및 입학전형 방법 등은 붙임의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할 수 있다.

- 나. (지정 등) 특수지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므로, 지정 해제 학교 및 학교별 해제 사유는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해제 학교의 예) 부산 장안고, 울산 세인고 등

- 다. (전학)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따르므로, 특수지 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의 전학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라. (교사) 특수지 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인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에 따라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원을 임용하고 있고, 공립학교인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장(전보임용)에 따라 해당 교육청에서 수립한 전보계획에 의거하여 교원의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고려하여 전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수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에 대한 정보는 교육부에서 파악이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61. 코로나-19로 인한 수업료 관련 문의



질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립초 수업료 감면과 반환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20-06-15(학교정책과)

-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의 초·중·고교가 온라인수업 이후 단계적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립초 수업료 징수금액, 징수방법 및 감액·반환에 대하여는 학교장 및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교육부는 학교방역 및 지역 감염에 대한 선제적 조치 등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 코로나-19 관련 9월학기제 도입 건의

 **질의**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관련하여 9월학기제 도입을 건의 드립니다.

 **회신** 2020-04-01(학교정책과)

- 가. 학기·학제 개편은 정치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 논리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바, 9월 신학기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문제와 실효성, 기대되는 학교교육의 질적 도약 내용과 실효성, 긴 여름방학의 체험활동에 따른 교육격차와 사교육 심화 등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나. 또한 9월학기제 도입을 위해서는 첫째,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둘째, 학기제 전환으로 교육체제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구체적이고 타당한 대안 수립 및 비용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 따라서, 9월학기제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 취학학교 변경 관련 문의



질의

취학학교 변경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학교장의 승낙을 받는 경우 “제18조 (취학학교의 변경)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회신

2020-01-07(학교정책과)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의 ‘부득이한 사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 아동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법령 외에도 시도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하게 인정할만한 사유를 관련 지침에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지침에 따라 학교 변경에 대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따라서 거주지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관련 지침을 문의하시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민원



64. 학구(통학구역) 온라인 확인 방법



질의

주소를 이용하여 학구(통학구역)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회신

2020-04-01(학교정책과)

- 학구도안내서비스(<https://schoolzone.emac.kr>)를 이용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원 인사·복지



65. 교육공무원의 불임·난임 휴직



질의

교육공무원의 불임·난임 휴직 사용기간 및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불임·난임을 사유로 한 질병휴직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요?



회신

2019-12-19(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19.8.20.) 취지는 현재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임용권자가 해당 교육공무원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함으로써 가족계획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할 때 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2020.2.21.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되는 불임·난임 휴직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법령의 시행취지와 타 질병과의 형평성 및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개정 전과 개정 후가 동일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임용권자는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력평정, 봉급, 수당 등 처우에 관하여는 기존 질병휴직에 적용하였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각 시도 교육청에 불임·난임 휴직에 관한 세부 시행 사항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시도교육청 안내)
- 한편, 「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에 따라 교원의 휴복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소관 업무이므로, 복직 시 제출서류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할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와 추가 상의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66.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 경력인정

 **질의** 육아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 승진경력에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회신** 2020-6-4(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재직기간 경력인정에 있어 휴직기간은 휴직사유에 따라 ‘승진경력’, ‘호봉승급경력’이 달리 인정됩니다. 육아휴직의 승진경력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경력의 기간 계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휴직기간의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보아 승진경력 평정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한편, 육아휴직의 호봉승급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6호에 따라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인정하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이 인정됩니다.
- 이에 따라, 귀하의 호봉승급에 인정되는 경력인 NEIS 인사기록상 근무년수(정근년수)와 재직기간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자치법」 제20조(관장사무)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육아휴직 경력인정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교육청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7. 교육공무원 질병휴직 후 자율연수휴직 사용

질의 질병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복직과 동시에 자율연수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신 2020-7-23(교원정책과)

- 질병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이며, 자율연수휴직은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2호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임용권자가 명할 수 있는 청원휴직입니다.
- 질병휴직 후 복직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은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진단서를 토대로 해당 교육공무원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 자율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는, 임용권자인 시도 교육감이 먼저 질병휴직 복직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질병휴직 복직이 되었다면 시도교육청 자체 자율연수휴직 허가기준에 따라 자율연수휴직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또한, 「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휴·복직 처리에 관한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휴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 교육청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8. 교육공무원 자율연수휴직 확대

 **질의** 자율연수휴직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및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20-10-20(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제1항12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이며, 동법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11호에 따라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교육공무원의 자율연수휴직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직기간 요건과 재직 중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2020.5.8.~6.17.에 이루어졌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의 입법 과정에 따라 시행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9. 기간제교원의 공무원 여부



질의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 혹은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요?



회신

2019-12-20(교원정책과)

-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정규교원 결원 대체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임용하고, 신분보장·휴직·정년·징계 의결 요구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을 제외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무를 지니는 한시적 교원에 해당되나,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70. 육아시간 사용월 계산 관련 문의

 질의 12. 3.~1. 2.까지 육아시간 사용월 지정 후 12. 24. 최종 사용하고, 1. 28.부터 다시 사용월을 지정하였다면 다음 육아시간 사용월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20-02-26(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은 2018. 7. 2.자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만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시간 사용월은 월단위로 지정하며, 월단위 지정은 월할 공제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월에 1일을 사용하여도,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귀하의 경우 12. 3.~1. 2.까지 육아시간 사용월 지정 후 12. 24. 최종 사용하고, 1. 28.부터 다시 사용월을 지정하였다면 다음 육아시간 사용월은 1. 28. ~ 2. 27.입니다. 아울러, 「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복무 등 처리에 관한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71. 퇴직교원 징계기록 말소 관련 문의



질의

퇴직 후 징계기록 말소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20-02-28(교원정책과)

- 귀하의 민원 내용은 ‘퇴직교원의 징계기록 말소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8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에 따라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에 정정·변경 사유 발생 시 인사담당관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같은 영 제8조의2(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에서 징계처분 집행일로부터 말소제한기한이 경과한 후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생산 완료된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법」 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에 따라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이 보장 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므로 인사담당관은 퇴직교원의 인사기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퇴직교원의 경력증명서 상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인사기록 보관자이자 징계처분기록의 말소권자인 퇴직 당시 임용권자로부터 징계처분기록이 말소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발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2.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질의

제41조 연수 기간 중 특별휴가(배우자 출산)가 발생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지요?



회신

2020-03-24(교원정책과)

- 2020. 1. 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에 따르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경조사휴가가 주어져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교원에게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안정적인 학사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복무 승인권자인 학교장은 휴가 사유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의 승인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연수가 아닌 배우자 돌봄 등 자녀 출산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면, 앞서 승인된 41조 연수는 기결취소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속 시도교육청 복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교육공무원 병가일수 계산 관련 문의



질의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 산입하는지요?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지요?



회신

2020-05-08(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따라 연가를 제외한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합니다. 이때, 휴가기간이라 함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합니다.
- 이에 따라,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는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휴가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합니다.
- 또한,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19일을 병가 사용하고, 10일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을 병가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연속된 병가사용 일수를 확인 후 30일이상이 되면, 먼저 사용한 19일의 병가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 및 다음 사용한 26일의 병가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포함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기관은 해당 소속 교육공무원의 병가제도 악용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악용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74. 교육공무원 겸직 관련 문의



질의

교육공무원의 사설모의고사 출제 또는 학습교재 개발 참여가 가능한지요?



회신

2020-06-09(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의 각 호에서 영리업무 금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는 같은 영 제26조(겸직허가)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에 따르면 직무능률 저해, 공무에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겸직허가 여부의 결정은 소속기관장이 해당 교육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적인 저술·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초 1회의 시험 문항출제, 학습교재 개발의 경우 겸직허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주관기관 및 업체 등을 달리하여 문항출제, 학습교재 개발을 계속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다면 출제·개발 활동내용, 활동기간, 수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갖추어 소속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겸직허가 승인을 받을 경우 겸직이 가능합니다.

- 겸직허가 승인 이후 겸직허가 받은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하며, 겸직허가권자는 소속기관장이므로 소속 학교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 소속 학교장에게 다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아울러, 「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복무 등 처리에 관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겸직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속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5. 교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

 질의 초과근무신청 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신 2020-07-03(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따라 기관장인 학교장은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간외 근무를 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 이때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하며, 「초·중등 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4항에 따라 교사에게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부여되었으므로, 교수학습활동, 평가 등은 교육공무원의 본연의 직무로 판단됩니다.
- 한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기관장은 불필요한 초과 근무명령,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자체 복무점검,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의 초과근무수당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교수학습활동 준비, 평가문항 출제 등은 교원의 시간외근무 인정이 가능한 사유로 판단되나, 동시에 학교장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문항출제·교재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시간외근무 명령권자인 학교장이 시간외근무 명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76.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문의

질의 사립학교 교원이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원면직을 한 경우 추후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소급하여 사학연금의 절반을 감하는지요?

회신 2020-07-22(교육협력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75조(신분변동신고)에 따라 학교기관의 장은 사립학교 교원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면 공단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 퇴직 사유는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의해 법적용 교원의 급여부문(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준용법에 따르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9조에 따라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면서 또는 급여지급 이후 급여제한사유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경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그 급여를 소급하여 제한하고 기 지급한 급여 중 제한되었어야 할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61조의2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며,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도 교직원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때와 퇴직급여 지급 후 5년 까지는 경찰에 해당자에 대한 형벌 사항 등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직되고, 준용법인 「공무원연금법」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소급하여 제한받게 됩니다.

전화민원



77. 국가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도입 관련 문의



질의

국가공무원 가족돌봄휴가가 가능한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 (가족돌봄휴가 도입)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10일 이내의 돌봄휴가(특별휴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유급휴가 범위) 자녀에 대한 돌봄 사유*에 한하여 유급휴가 최대 3일**까지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 * ①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 ② 교사와의 상담 ③ 미성년 또는 장애인인 자녀 병원 진료 동행시 ④ 어린이집·학교 등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⑤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시
 - **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한 자녀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연간 3일 이내 유급휴가 부여
- (무급휴가 범위) 자녀 외의 가족 돌봄 시 또는 유급 자녀돌봄휴가 소진 시 무급휴가 부여되며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78. 교원의 경조사휴가 시 휴가일수 산정 관련 문의



질의

교원(교육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본인 결혼 시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및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 본인 결혼시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는 5일입니다.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79. 호봉획정 시 임용 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질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전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획정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 가. 국·공립학교 근무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에는 8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사립학교 근무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청에 임면이 보고되지 않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5할을 인정을 수 있습니다.

※ 단,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에는 8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자격



80.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 인정 여부



질의

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9-17(교원양성연수과)

-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2조에는 교원, 교원 외의 구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2013.10.30>

- 상기 규정에 의해 학교에는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과 ‘교원 외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으며, 교원 외인 ‘산학겸임교사 등’에는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으로, 교육경력 범의와 관련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 상기 규정에 의해 교육경력은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일 경우 인정되며,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포함한 교원 외 산학겸임교사 등의 경력은 자격검정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81. 강사 경력을 통한 교육실습 면제 여부



질의

‘초등스포츠강사’ 경력을 통한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면제 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3-24(교원양성연수과)

- 먼저 교육실습 면제와 관련하여 「유치원 및 초·중·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제5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위 조항에서 언급된 ‘산학겸임교사 등’과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법령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스포츠강사’가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분류되는지에 관하여서는 계약상의 신분이나 직위, 교육 담당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교육실습의 면제 여부는 학칙에 따라 대학의 장이 판단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대학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2.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기준

질의 대학교수로 10년 이상 근무 중인데 중등학교정교사 2급 자격증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회신 2020-09-17(교원양성연수과)

-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사 자격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격 학 교 별	정 교 사(2급)
중등학교	1.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7. 초등학교의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또한, 이와 관련한 무시험검정의 신청에 대하여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이외의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상기 규정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으시다면, 교육감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무시험검정을 위한 원서 및 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 초등학교사 자격기준 전공학점



질의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 세부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20-09-01(교원양성연수과)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1항 관련 별표3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종별	전공과목
초등학교 정교사(2급)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84. 전문상담교사 2급의 자격기준관련 문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 취득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20-05-26(교원양성연수과)

- 전문상담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2]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학점을 취득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 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 귀하께서 현재 전문상담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며, 첫 번째는 ‘전문상담교사(2급) 제1호’ 자격기준에 의거 전문상담교사(2급)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일반대학에서 양성과정을 마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경우는 ‘전문상담교사(2급) 제2호’ 자격기준에 의거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사(2급) 양성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 상담교사(2급) 제3호’ 자격기준에 의거 취득하는 방법은 과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화민원



85. 유·초·중등 교원신규임용시험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기준



질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20년 5월부터 기존 3종(초, 중, 고급)에서 2종(기본, 심화)로 체계 개편됨에 따라 교원신규임용시험에서도 한국사 3급 이상 합격기준에 변동이 있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시험체제는 변동되었으나 6개 인증등급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동일하게 3급 이상을 합격결정기준으로 봅니다. 제47회(2020. 6. 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합니다.



86.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시 교육경력 산출 관련 문의



질의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경우 1급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교육대학원 원서접수일 기준으로는 교육경력이 3년 미만입니다. 다만 내년도 2월 28일을 기점으로 교육경력 3년이 되어 3월 입학 전까지는 교육경력을 충족합니다. 현재 교육대학원 모집 기간에 지원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 3월 입학 전까지 교육경력이 충족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교육경력 산출시 소지한 자격증의 학교급과 표시과목 일치 여부는 확인바랍니다.

Ⅲ

교육안전정보



학생안전



1. 학교안전법 개정 요구



질의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7433호)에 따라 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분기 6시간 이상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에서는 현업업무종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6조제1항 관련)에 따른 내용으로 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교육내용에 포함된 동일 교육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별개의 교육으로 따로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2020-09-09(학교안전총괄과)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이 학교안전교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6호에 의거,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은 학교안전교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은 학교안전교육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직원의 학교안전교육 이수능 안전교육 영역*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단일 연수과정 또는 단일 영역별 안전 교육의 합(3개 영역 이상 반드시 포함)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2. 무단횡단 교육 실시 요청



질의

학교에서 무단횡단에 대한 위험을 알리기 위해 교육이 가능할지요?



회신

2019-12-17(학교안전총괄과)

-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경찰청,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안전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3. 학교 시설 안전관리 기준 관련 문의



질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조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별표1 건축물분야 제1호의 가’를 보면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 학교를 계획할 경우 ‘보행자 전용 출입구(교문)’와 ‘차량 전용 출입구(교문)’로 별도의 위치에 구분하여 설치하였을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위의 ‘차량 전용 출입구(교문)’에도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학교 교사동 주변 도로는 대부분 보행로로 설치되나 비상 시 비상차량 통행로로 공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여야 하는지요?



회신

2020-07-21(학교안전총괄과)

- 교문이 차량 전용 출입구와 보행자 전용 출입구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전용 출입구에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학교 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차도는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시 비상차량 통행로로 공용 이용하는 경우는 학교 현장 여건, 학생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정보



4. 나이스 업무관련 건의



질의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명 입력’에서 띄어쓰기가 안 되어 불편합니다. 학생들이 영어로 동아리명을 짓는데 영어와 한글 띄어쓰기가 안 되어서 이상한 이름이 되어 버립니다. 동아리명 입력을 할 때 띄어쓰기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가능할지요? 학적-‘출결 특기사항’을 입력할 때 영어 우선으로 되어 매번 한/영 키를 눌러야 합니다. 한국인이 사용하는 나이스 시스템이므로 한글 우선으로 입력되도록 조치가 가능할지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할 때, 학년별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가능할지요? 3학년의 경우 굳이 1,2학년이 필요 없는 내용일 때 같이 출력되므로 종이나 출력 시간 낭비가 생깁니다. 위 사항들이 개선이 가능할지요?



회신

2020-06-23(교육정보화과)

- 나이스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출력기능 개선 관련 3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1.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명 입력란의 띄어쓰기 기능 개선

동아리명 입력기능은 실제 동아리명은 같으나, 아래 예시와 같이 공백으로 인해 다른 동아리명이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띄어쓰기 입력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예시) 영어회화반 ≠ 영어 회화반, 발야구반 ≠ 발 야구반 등

2. 학적-출결특기사항 입력 시 한글이 우선입력 되도록 기능 개선

귀하의 의견대로 출결 특기사항 입력 시 한글을 주 언어로 적용하여 우선입력 할 수 있도록 금주 중(~6.26)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 학교생활기록부 출력 시 학년별로 출력 가능하도록 개선

현재 나이스에서 학생부 항목별로 해당 학년자료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별 출력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메뉴를 참고하시어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출력의 항목별 출력 탭 활용

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질의

일반 대학생의 개인정보를 대학교 측에 열람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합법이고 가능한 것이지요?



회신

2020-05-04(교육정보화과)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제한하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 항목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교육청별 유·초·중등학교 현황



질의

교육청별로 유·초·중등학교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이 어렵고,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청별 유·초·중등학교 현황을 알 수 있는지요?



회신

2020-02-18(교육통계과)

-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등에 관한 교육통계 현황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 접속 ⇒ 상단탭 : 교육통계 ⇒ 연도선택 ⇒ 유·초·중등통계 ⇒ 개황 ⇒ 학교급별 개황

전화민원



7. 자가진단 앱 사용자의 로그인 비밀번호 분실 시 조치방법



질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로그인할 때의 비밀번호를 분실했습니다.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육정보화과)

-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학교 관리자(담임/부서)에게 비밀번호를 초기화를 요청하여 최초 접속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8. 전학생의 자가진단 앱 사용 관련 문의



질의

전학을 와서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앱 사용이 가능할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육정보화과)

- 자가진단시스템에 기관(학교)관리자 또는 담임교사로 등록된 사람이 PC 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자가진단시스템 기관(학교)관리자 웹 서비스(시도 hcm.eduro.go.kr)'로 접속 후, 대상자관리 메뉴에서 학급(부서)별 대상자를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9. 2020년 기숙형 고등학교 현황



질의

2020 기숙형 고등학교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육통계과)

- 교육부홈페이지 - 정책정보공표 - 초중고교육 - 2020 기숙형 고등학교 현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0. 개별 대학의 학과별 재학생 수 확인 방법



질의

국내 개별 대학별로 학과별 재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육통계과)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교육통계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접속을 하여 알림·서비스-주요요청자료 에서 '학교/학과별 데이터 셋'의 제목으로 탑재되어 있는 첨부된 엑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설



11. 기숙사 1인1실 권고 요청



질의

현재 2.5단계로 모든 학원, 공공기관이 휴원하거나 재택근무 등 운영을 안 하고 있지만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생 지원 기숙사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히 방역수칙을 어기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대처 방안이 없는지요?



회신

2020-06-15(교육시설과)

- 교육부에서는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기숙사 집단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각 대학에 「대학 학사운영 안내사항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안내」를 배포하였습니다. 해당 지침 내용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기숙사의 시설관리 방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지침에 따라 대학에서는 기숙사 운영 전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이 필수적이며 가능한 1인 1실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다인실을 사용해야할 경우 침대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 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증상자 발생 시 대학에서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대면수업이 일부 진행할 경우 장거리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민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학숙의 경우 값비싼 월세 등 주거부담이 큰 서울소재에 위치하고 있는 특성상 다수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생길 수 있는 주거부담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기숙사운영을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령 질의



질의

(질의1) 학교의 토지에 대한 공익 목적 수용 시 해당되는 법률을 알 수 있는지요?

(질의2) 학교진입로가 '교사용 대지' 와 '교지'에 해당되는지요?



회신

2020-11-19(교육시설과)

- (답변1)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동법 제10조(수용 및 사용)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답변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교사용 대지는 제3조(교사)에 따른 교사가 위치하고 있는 부지로서 그 시설에 수반되는 옥외주차장, 조경면적, 생태연못 등은 교사용 대지에 포함됩니다. 또한 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이기 때문에 학교진입로가 교사용 대지에 포함된다면 교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정기점검 조사양식 간소화 문의



질의

재해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세부 점검표가 건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가 가능할지요?



회신

2020-05-21(교육시설과)

-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에 건물별로 구분하여 입력을 하는 이유는 정기점검 시 시설물별 지적사항과 후속조치 내역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정기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는 건물의 경우는 질의와 같이 간소화 하기 위하여 점검표에 모든 건물명을 기입하여 간소화 할 수 있으며,
-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작성하신 후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내용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학교시설안전기준(교실 여닫이문 설치 시 유리창 설치) 관련



질의

교실에 여닫이문 설치 시 문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해야 하는데 음악실처럼 방음 시설이 필요한 경우 출입문에 유리창을 설치해야 되는지요?



회신

2020-02-17(교육시설과)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실의 용도가 아닌 출입문의 구조에 따라 유리창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 기준에 의해 음악실처럼 방음 시설이 필요한 경우라도 출입문에 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5. 건축물 내진설계 및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건의



질의

건축물 내진설계 및 시공에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회신

2020-02-05(교육시설과)

-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설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에 관한 법적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 교육 및 홍보 실시를 통해 관리·감독 강화에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6.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시공 관련 문의



질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포함된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0-02-13 (교육시설과)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1.6.3.에 따라 시공 중 내진구조성능 등 확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내진보강설계 책임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감리자에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2.6.2.에 따라 내진보강공사 책임구조 기술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7. 학교시설 내진설계 체크리스트 작성 시점 및 대상 문의

 **질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포함된 [별표1,2,3] 체크리스트 적용 시점과 대상이 궁금합니다.

 **회신** 2020-02-13(교육시설과)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은 신축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기존 학교시설 내진보강 모두에 대한 규정으로서 아래와 같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 가. 신축 학교시설의 내진설계 시 [별표1] 설계단계 체크리스트, 시공 시 [별표2]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적용하여 작성하며
 - 나.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보강 시 [별표1] 설계단계 체크리스트, [별표2] 시공단계 체크리스트, [별표3] 내진성능평가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8. 학교내진설계 비구조요소와 내화재료에 대한 대책

 **질의** 건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비구조요소(기계 및 전기설비 등)와 내화재료에 대하여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0-04-27/2020-06-22(교육시설과)

- 학교건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비구조요소(건축, 기계 및 전기설비 등)와 내화재료에 대하여 우리 부는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통해, 비구조요소와 내화재료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설계 구조해석



질의

현장조사가 어렵거나 특정 공법을 사용희망 등 다양한 변수의 상황 속에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설계의 구조해석 방향이 궁금합니다.



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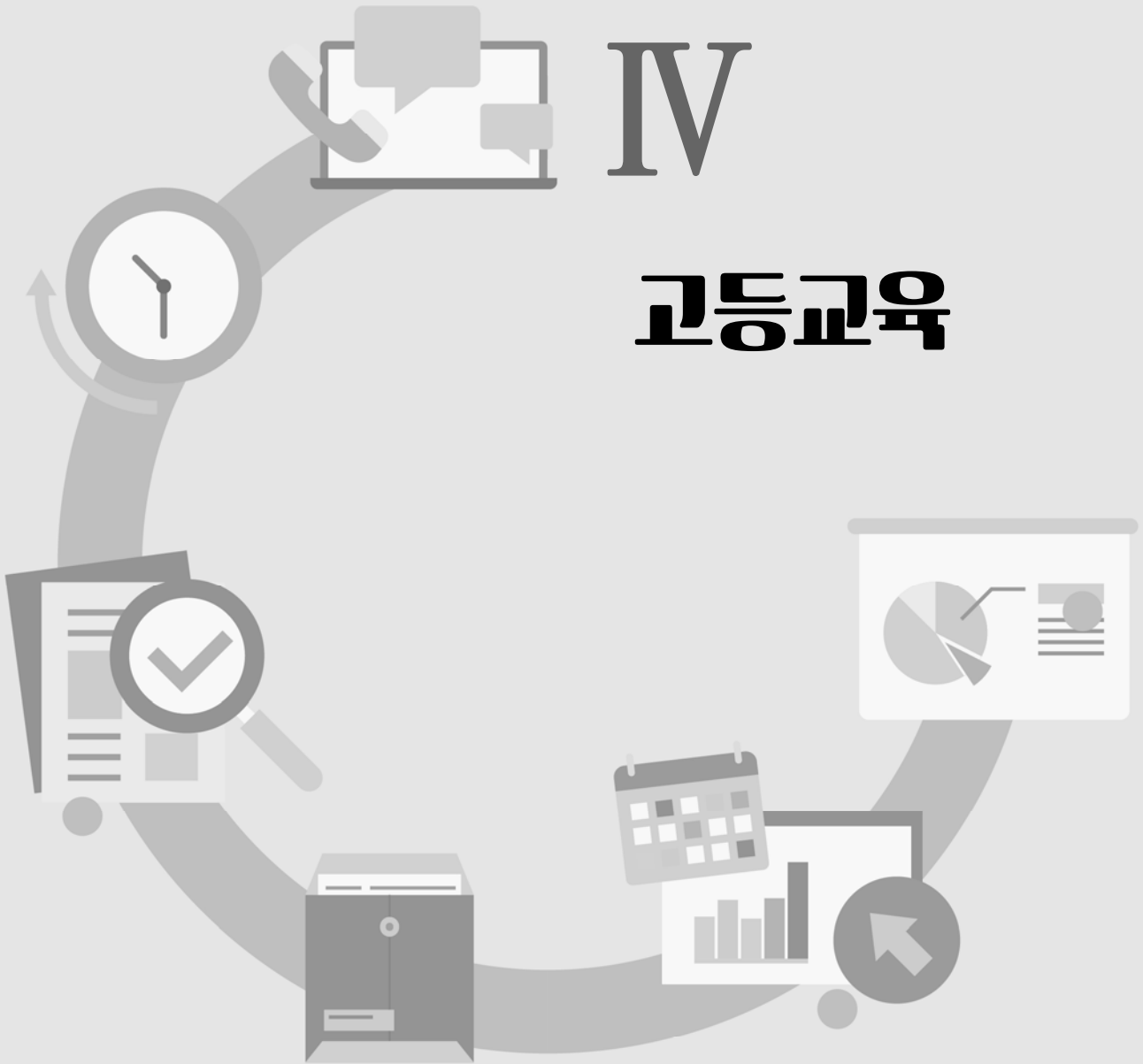
2020-04-10/2020-07-02(교육시설과)

- 내진성능평가와 내진설계는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하며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 매뉴얼」에 따라 절차와 검증된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IV

고등교육



대학 학사·제도



1. 대학원생 사적 업무 강요 및 무보수 노동에 대한 구제방법



질의

대학원생의 사적 업무 강요 및 무보수 노동에 대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회신

2020-10-07(대학학사제도과)

- 교육부는 대학원생에 대한 인권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 각 대학이 대학원생 권리장전 채택, 인권 예방 교육 실시, 인권센터 설치 등의 여건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대학의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총장 또는 학장의 임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귀하께서 사적 업무를 강요받는 사항은 해당 대학의 인권센터 등에 상담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대학 및 학과 등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해당 대학에 확인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용종속관계 판단 기준은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게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게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 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4.12.9, 94다 22859).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학원 지도교수가 교육기관과 무관하게 교수 개인회사의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지도학생(대학원생)을 사용종속적인 지휘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지도학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위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기준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성 여부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법원 판례를 기준을 근거로 조사하여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채불로 보아 사용자에게 채불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동법 제43조(근무 중의 경우), 퇴직 중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같은 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미지급된 임금은 민사소송 또는 소액채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채불금품에 대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박사학위 취득 요건



질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0-07-27(대학학사제도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논문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박사 학위논문 제출자격으로 소정의 학점 이수, 외국어종합시험 및 논문자격시험(종합시험) 통과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교육연구를 위한 소양과 연구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원 학위의 질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해당 대학명을 남겨주시지 않아 해당 대학의 학칙 및 박사 학위논문 제출자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바, 자세한 확인을 원하시면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해당 대학 및 대학원명 등을 말씀해 주시면 대학에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외국대학 수료생의 대학 졸업 인정 여부



질의

외국 대학 수료생인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회신

2020-11-20(대학학사제도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 대학의 수료생은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참고로, 외국고등교육기관의 인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02-6919-3914)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대학마다 졸업 이수학점이 다른 이유



질의

어떤 대학은 140학점 이수해야 졸업이고 어떤 대학은 130학점 이수해야 졸업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신

2020-04-16(대학학사제도과)

- 졸업과 관련 하여는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각 대학은 고유한 설립목적과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학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졸업요구 학점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대학원생도 대학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도 「고등교육법」 상 대학생에 포함되나요?



회신

2020-07-24(대학학사제도과)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라 대학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학원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대학생을 정의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을 대학생이라고 칭하고, 대학에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재적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원생이라고 칭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6. 교사 학술논문 무료 이용 지원



질의

현직 교원도 무료로 학술 논문을 검색·이용가능하게 해주세요.



회신

2020-08-11(학술진흥과)

- 학술논문의 무료 이용은 국내 학술논문의 공유·유통 현황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 RISS 서비스 기준(2020.6.30), 공공기관 등을 통해 수집·제공되어 무료제공이 가능한 논문은 약 27%(원문 156만 건)이나, 민간업체(누리미디어, 한국학술논문 등)를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논문은 약 75%(원문 410만 건)에 달합니다.
- 유료로 제공되는 논문의 경우, 저자가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고 학회가 이를 민간업체에 양도한 상태로 “별도의 구독료 지원 없이는” 대학 소속 이용자 외에는 논문의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구독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예산과 이를 위한 우선순위 배정에는 사회적 합의 또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국내 학술유관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과의 무료 논문 연계 확대 및 학회들의 논문 OA(Open Access, 무료 전자자료) 전환 운동 등의 지원을 통해 많은 이용자들이 국내외 학술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우수한 국내·외 학술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 2019년 역량강화형 지원 사업에서 정원 감축 사항



질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역량강화형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기간 동안 정원감축을 하여야 하며, 목표 추가 달성 시 가산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0-03-06(대학재정장학과)

- 교육부는 정원감축 및 특성화 의지가 있는 역량강화대학에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적정 규모화 유도(권고비율 : 3년간 총 10%) 및 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전략, 정원감축 권고 이행계획을 포함한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에서 제출한 ‘연도별 정원감축 이행계획 미 이행’시 연차평가*에서 감점(3점)이 있습니다. 다만, 초과 이행에 따른 가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인센티브 지급



8. 국가장학금 지원 방법



질의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신

2020-02-27(대학재정장학과)

-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
- 한국 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20.1학기 2차 신청기간은 2.3.(월)부터 3.10.(화) 18시까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실(☎1599-200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 다자녀 가정의 대학 등록금 지원

질의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 기준 등이 궁금합니다.

회신 2020-06-25(대학재정장학과)

- 교육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과 연계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이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소득(재산)·성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성적 : 직전학기 B학점 이상(단,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학기 미적용 등)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다자녀 장학금 제도를 두어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연간 520만원(기초~지원3구간)부터 450만원(4~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 장학금 외에도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의 학생, 장애인 학생,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등 우대 지원 권장

10. 국가장학금 기간 내 미신청자 구제

 **질의**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을 놓친 학생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회신** 2020-10-07(대학재정장학과)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이 기간 내 장학금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여 왔습니다.
※ '15-1학기 1차 : '14.11.20.~'14.12.8.(19일) →
'20-1학기 1차 : '19.11.19.~'19.12.27.(29일)
- 또한,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들을 위해 2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신청 마감 이후 추가적인 기간 연장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며, 한국장학재단의 회원정보 메뉴에서 문자 안내 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신청 기간 등을 문자로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학자금 대출 정보 부모 통지 필요

 **질의** 무분별한 학자금(생활비) 대출 성행이 우려되므로 학자금대출 정보를 부모에게도 알려주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신** 2020-03-13(대학재정장학과)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사용 및 과도한 대출 방지를 위해 2020.1학기부터 학자금 대출정보를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통지하고 있습니다.
※ 단, 기혼자 및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0세 초과자 등은 제외



12. 대학 졸업유예 학생에 대한 등록금 부과 가능 여부



질의

대학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에 대하여도 등록금을 부과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0-01-20(대학재정장학과)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1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할 뿐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제2항에 따르면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산정·징수할 수 있습니다.



13. 대학 등록금 고지 시 학생회비 등 통합고지 문제



질의

대학 등록금을 고지 할 때 학생회비나 기숙사비 등 선택적 경비를 통합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신

2020-09-14(대학재정장학과)

- 대학에서는 등록금과 그 외 선택적 경비(기숙사비, 학생회비)를 등록금 고지서에 등록금과 함께 기재하여 수납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선택 납부할 수 있는 비용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비로 오인하여 납부하는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교육부는 이러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생회비 등 선택적 경비를 등록금 고지서에 통합 고지하지 않도록 대학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금 및 학생회비 통합 고지는 학생의 등록금 납부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지양하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14. 대학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등



질의

대학에서 자퇴했는데 등록금 반환기준 및 범위가 궁금합니다.



회신

2020-09-01(대학재정장학과)

-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등록금 반환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에 따른 등록금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또한 반환금액은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하나,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은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환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15.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여부



질의

대학 등록금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0-03-01(대학재정장학과)

- 등록금 카드 납부 시행 여부 및 방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다만, 대부분의 대학(국내 380개 대학, '20년 대학정보공시 기준)에서 학생 편의를 위해 카드 납부와 유사한 효과가 있고 할부 수수료 부담이 없는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어, 학생들이 분할납부제도를 통해서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16. 중증장애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감면



질의

중증장애인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채무감면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회신

2020-10-15(대학재정장학과)

- 학자금 대출 이후 사망·심신장애로 학자금 상환이 어려운 자의 채무 면제를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을 일부 개정('20.4.14.)하였습니다.
- 시행령에서는 상환면제 기준의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채무면제기준 및 규모 설정, 소요예산 확보,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결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많은 분들께서 채무 면제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채무면제 제도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학자금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



질의

00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00지원금 등의 다양한 장학금이 중복지원 방지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또,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교내·외 장학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중복지원 방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요?



회신

2020-04-02(대학재정장학과)

-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및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와 학자금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의 방지) 등에 따라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학자금 중복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 학자금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105호)에 따라 등록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규정, 장학증서 등에 등록금 지원 목적임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여 동일 학기에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필수경비+선택경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판단하고 초과한 금액을 환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 이외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대가성 장학금,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은 중복지원 방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귀 대학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의 지급 목적이 사업계획서, 선발공고문 등에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 또는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중복지원 방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8. 부모 결손가정 학생 대학 진학 시 등록금 면제 여부



질의

부모가 없는 학생이 대학진학을 할 때 학비가 면제되나요?



회신

2020-06-09(대학재정장학과)

-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소득연계형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 액에 따라 결정

- 국가장학금 제도는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있기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에도 학생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를 통해 8구간 이하에 해당해야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실(☎1599-2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코로나-19 관련 ○○사이버대 학사관리 안내

 **질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이버대학교 학사관련 주의사항을 문자로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회신** 2020-11-24(이러닝과)

- 교육부에서는 각 대학에 코로나-19발생으로 인한 대학 학사운영 안내 사항을 전달하고, 코로나-19예방 관리 지침을 안내(대학학사제도과-6318, '20.4.23.)하였으며, 최근 집단감염 및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고등교육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대규모 행사 자제 및 집단 활동의 안전수칙 준수 강조 등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학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하는 안내문을 재차 전파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관련 대학 협조 요청 사항 안내」, 대학학사제도과-15263, '20.11.2.).
- 귀하께서 질의하신 학사관련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에, 동 대학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대학답변) 우리대학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발생 초기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개강을 2주 연기함은 물론 오프라인 행사 및 수업 등을 최소화하고 있음. 또한, 교육부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은 물론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안전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코로나-19의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부 또는 정부의 관련 지침 등에 근거하여 학생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 동물자원학과가 설치된 사이버대학 현황



질의

사이버대학 중 동물자원학과가 개설된 곳이 있을까요?



회신

2020-09-07(이러닝과)

- 2020학년도 사이버대학 학과 현황에 동물자원학과(축산과)의 명칭으로는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유사학과 중 동물관련 학과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 대학교의 반려동물학과 및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의 동물보건복지학과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21. 코로나-19 관련 자녀 지원금 제공 여부



질의

자녀가 만 20세 이상의 청년 또는 만 18세 이상 대학생(사이버대)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0-07-02(이러닝과)

- 교육부에서 코로나관련 사이버대학 및 일반대학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원금은 없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지원은 일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코로나가 아닌 국가장학금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제 등록생 학기 연장

질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대학교 시간제 등록생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불가능하여 학기 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신 2020-03-12(이러닝과)

- 현재 코로나-19 관련 및 사회복지 현장실습기관의 선정 등의 어려움을 겪는 바, 사회복지 현장실습 대상자의 경우 기존 6월 5일까지 실습관련 서류 제출 마감을 현재 6월 14일까지 연장하여 제출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더불어 6월 14일까지 실습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5월 12일까지 수강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전액 환불 처리하여 등록생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기존 학칙: 1/2 환불).
- 대다수의 시간제 등록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에서도 일정 조정 및 전액 환불 처리 등 노력하고 있으며, 시간제 등록생 개인별 일정을 고려하여 학습자에 맞는 학사 일정 조정은 불가능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3. 대학 학과 명칭 변경 가능 여부

질의 대학의 재활학과 명칭을 재활복지학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회신 2020-07-20(고등교육정책과)

- 귀하께서는 ‘대학의 재활학과 명칭을 재활복지학과로 변경 건의’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학의 학과의 명칭은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각급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사전공고, 심의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4.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관련



질의

대학 소속 교직원도 대학 행사 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회신

2020-12-12(국립대학정책과)

-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에 따라 심사수당은 ‘운영수당(210-02목)’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은 자기소관 사무 및 자기가 소속된 대학의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여기서 ‘자기가 소속된 대학’이란 대학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해당 대학의 행사 심사위원으로 소속 전임교원이 위촉된 경우 심사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5.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 및 지방거점국립대 지원 확대



질의

수도권의 주요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집중화 해소 및 지방거점국립 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회신

2020-10-28(국립대학정책과)

-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대학을 비수도권으로 이전 분산 배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각 대학 구성원의 합의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교육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인재가 졸업 후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인재를 30%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시행 중임.

26. 코러스 복무시스템 개선 요청



질의

코러스 복무시스템의 전자결재 연동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유출이 우려되니 개선을 요청합니다.



회신

2020-09-21(국립대학자원관리팀)

- 초과근무, 연가, 병가 및 진단서 노출은 결재 상신 시 ‘결재정보’ 대화상자에서 ‘공개여부’ 항목의 ‘비공개’ 설정을 통하여 문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이 설정 가능합니다.
 - 코러스는 39개 국립대학의 요구사항 수렴과 협의를 통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문서 비공개 설정만으로는 불충분 할 수 있어 '20년 10월 중, 39개 국립대학의 인사담당(복무) 업무 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하여 검토 후 결과에 따라 조치 등 추가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코러스 운영센터에서는 새로운 기능 요구 및 운영방법에 대해 ITSM(<https://itsm.korus.ac.kr>)을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향후 ITSM으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 (후속조치결과) '20.10.7. 업무협의체 회의에 인사복무 분야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학 담당자의 의견수렴 결과 답변이 적정한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27. 사립대학 개방형이사 중임

 질의 사립대학의 개방형이사도 중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0-01-20(사립대학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방형이사(감사)의 중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개방형이사의 경우 중임이 가능하며, 개방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8. 사립대학 직장어린이집 지역주민 자녀 이용 가능 여부

 질의 사립대학에서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중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교비로(나머지 50%는 국가보조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에 정원에 여유가 있어 학교가 위치한 해당구청에서 지역 주민의 자녀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의 자녀를 원아로 받을 경우, 학교에서 교비로 지급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가 학교 구성원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학교와 관련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에 위반됨은 없는지요?

 회신 2020-01-06(사립대학정책과)

- 지역 주민 자녀의 추가 수용으로 인해 교비회계에서 추가 부담분이 발생한다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대학 직원의 겸임교수, 시간강사 가능 여부



질의

대학직원이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 재직 중인 대학에서 겸임교수나 시간강사로 겸직이 가능한지요?



회신

2020-01-23(사립대학정책과)

-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직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학교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사립학교법」 제70조의2). 따라서 사립대학 직원의 겸직 가능 여부는 대학의 내부 복무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0. 교원의 법인 사무국장 겸직 가능 여부



질의

교원의 학교법인 사무국장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0-02-27(사립대학정책과)

- 교원의 학교법인 업무 겸직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정한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비추어볼 때 교원 본연의 임무와는 관련성이 적다고 보이며,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교수의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에도 소속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교원의 겸직허용은 수행할 업무의 성격,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학교업무와 학교(본부)가 상호 견제를 통해 사학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볼 때, 학교 주요사업(기획) 관계자인 교수가 ‘학교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중요 사안을 검토하는 체제의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1. 현장실습 대학생 실습지원비 지급



질의

대학생이 실습기관에서 1~2주 정도 현장실습을 할 경우 식비, 교통비, 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0-06-09(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7조에는 실습기관은 현장 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사항 및 범위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직무가 부여(workload)되는 모든 현장실습 수행행위는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2. 신입생 모집요강 상 입학정원에 계약학과 정원 포함 여부



질의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나와 있는 입학정원에 계약학과(행정관리학과) 정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신

2020-04-05(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계약학과 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학과 학생 정원은 별도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각호에 따라 해당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 재교육형 계약학과와 경우에도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정원을 100분의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등 정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1항 제1호, 대학교 신·증설의 경우는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하는 것으로 정원 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3. 수도권 소재 대학의 타 지역 계약학과 설치 제한 여부



질의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이 과밀억제권역 내 타 지역에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0-03-30(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으로 구분하여 학교 등 일정 시설의 신설·증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학교의 신·증설의 경우는 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하는 것으로 정원 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계약학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1항 제1호).

34. 산학협력단 정보공개

질의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회신 2020-02-11(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대학(교육행정기관)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로서 규정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며, 같은 법 제6조는 대학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대학의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8호에 따라 예·결산 내역 등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하며, 또한 현재 관련 정보를 대학 알리미 사이트 및 해당대학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35.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의료기관 현장실습 중단에 따른 실습지원비 환급

질의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의료기관 현장실습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 지급한 실습지원비에 대하여 환급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신 2020-02-28(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학교 측의 지원비 지급과 실습중단에 따른 환급 부분은 학교의 교비 회계에서 편성되어 지원되는 것으로서 학교의 자율적 결정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의무실습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지급한 실습지원비의 환급문제는 해당 학교의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6. 타 지역 사업소 전근에 따른 계약학과 학업유지 가능 여부



질의

계약학과 재학 중 타 사업소 전근에 따른 학업 유지가 가능한지요?



회신

2020-01-15(교육일자리총괄과)

- 계약학과 학생이 협약산업체의 인사발령(전근)에 의해 권역 밖으로 이동하였을 경우에 학생 신분유지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계약학과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의 지도교수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전근 후 타 사업소 시행 유사 계약학과 편입은 해당 대학의 학칙 및 계약학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조기취업자에 대한 대학 성적 평가기준



질의

대학 재학 중 조기취업자에 대한 학교 측의 성적평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9-12-23(전문대학정책과)

-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 이수 단위 및 성적의 관리 등은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미 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련 학사 운영 안내사항을 각 대학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 ※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

38. 대학교 명칭 변경 시 출신학교 기재방법

질의 졸업한 대학이 □□대학에서 ○○대학으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력서에 출신학교명을 적어야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회신 2020-09-24(전문대학정책과)

- ‘교명 변경에 따른 학력 작성방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00대학(전 □□대학)’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정확한 기재방법은 학력기재를 요청한 기관의 규정이나 작성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9. 간호학과 졸업요건과 학회비 필수 납부 여부

질의 간호학과 졸업요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회비는 꼭 납부해야 하나요?

회신 2020-05-29(전문대학지원과)

- 졸업, 교육과정의 운영,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등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0.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졸업자의 학사학위 인정 여부



질의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졸업자의 학위가 4년제 학사학위로 인정이 되는지요?



회신

2020-06-17(전문대학지원과)

-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제50조의 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운영)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해당 법령은 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전문대학에 설치·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졸업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에게 수여되는 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41. 간호학과 현장실습 온라인 대체



질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간호학과와 현장실습을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해 주세요.



회신

2020-09-28(전문대학지원과)

- 교육부는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안내를 통해 수업 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2020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운영과 관련하여서는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감염증의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전면 대면수업 실시를 지양하고,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토록 각 대학에 안내하였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 강화에 따라 수도권 지역 소재 대학에 대해 비대면 수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수도권 지역 외 대학도 비대면 수업 적극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각 대학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운영하므로 대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42. 전문대학 관련 문의(졸업 학점 등)



질의

전문대학 졸업 인정학점 기준은 최소 몇 학점이며, 교양, 전공, 현장실습 등의 최소 이수 학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신

2020-10-21(전문대학지원과)

- 전문대학의 졸업, 전공, 교양, 현장실습 관련 학점은 관련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제50조(학위의 수여) ①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전문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편입학, 휴·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목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2조(실습학기제와 학칙) 학교는 실습학기제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해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실습학기제 시행 대상 학년 및 학기
2. 실습학기제 시간당 부여 학점
3. 실습학기제의 졸업필수과목 여부
4. 실습학기제 최대 학점인정 수
5.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전화민원



43. 코로나-19 대학 대면시험 기준



질의

코로나-19가 심각한데 대학교에서 시험을 대면으로 본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0년 전화문의(대학학사제도과)

- 교육부는 코로나-19감염 확산에 따른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긴급 협조 요청의 공문을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시달하였습니다.
- 학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협조요청 사항)에 따라 수업과 평가 등에서 비대면 시행 전환 권고를 하였으며 불가피한 대면 수업과 평가의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44.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질의

다자녀 가정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이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그 지원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0년 전화문의(대학재정장학과)

- 다자녀(세 자녀 이상)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이며,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수로 합산가능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하며, 장학금(I. II.유형)신청 시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뤄집니다.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1599-200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45. 폐교 대학의 교육 제 증명 발급



질의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였으나 대학성적이 부족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졸업을 하였습니다.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응시제출서류에 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 교직과목이수증명서가 있는데 출신대학이 폐교되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정부 24를 이용했는데 성적증명서만 발급이 됩니다.



회신

2020년 전화문의(사립대학정책과)

- 폐교대학의 교육 제 증명 발급에 대한 업무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교대학 통합증명 발급 서비스’ 사이트에서 아이핀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발급가능 합니다. 본인 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담당자를 통한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 또한 국가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 폐교대학 통합증명발급서비스와 정부24 간 연계를 통해 재단 운영 홈페이지에 추가하여 제 증명 발급 창구를 확대하였는데요, 현재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되는 학생 관련 증명서는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학부, 대학원), 제적증명서입니다.
- 성적원부, 교직과목이수증명서, 학적부, 장학금(비)수혜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실습확인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폐교대학 통합 증명발급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6. 의료기관 현장실습 용어



질의

의료기관 현장실습 시 용어관련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 의료기관 현장실습 시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기관 : 보건의료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임상실습기관에 소속 학생들의 임상 실습교육을 위탁
- 임상실습기관 : 학생들의 임상능력 향상을 위해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교육병원, 기타 병·의원) 및 보건소 등 환자 진료가 이루어지는 시설
- 교육 관리자 : 교육기관 소속 교원(실습 지도교수 및 교·강사 등) 중에서 지정하며, 실습생 교육 및 지도·관리, 실습관리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수행
- 실습관리자 : 임상실습기관의 실습 관리 부서에서 지정하며, 실습생 증상 모니터링 및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유지 등 실습환경 전반을 관리(※ 임상 실습기관 소속으로 실습 지도를 담당하는 현장지도자 등과 동일한 사람을 지정할 필요는 없음)
- 실습생 : 임상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소속 학생

대학 인사·복무



47. 대학 교수 휴직 중 논문지도 가능 여부



질의

대학 교수가 휴직 중일 때 본인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를 할 수 있나요?



회신

2019-12-26(고등교육정책과)

- 휴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이라는 신분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나 직위(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휴직 중 직위 부여 또는 업무 수행 그리고 이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8.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복수의 석사학위 경력인정 관련 문의



질의

교육공무원(대학 교원) 경력환산시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을 10할로 계산하고 있는데, 수학기간을 달리하는 동등학위 취득 경력 또한 10할로 계산하여 중복인정이 가능한가요?



회신

2020-01-30(고등교육정책과)

-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및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서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을 인정(박사학위 취득 시에는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교육인적지원부, 2008)」에서는 석·박사 학위 취득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학위는 담당과목과 동일계열일 필요는 없으며, 2개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시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연구경력으로 10할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령 계산과 별개)

49.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 교원징계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제2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회신** 2020-07-08(고등교육정책과)

- 「사립학교법」 제25조의2(징계기준) 제2항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 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2호에서는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고등교육법」 제19조(학교의 조직) 제1항에서는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2항에서는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가 누구인지는, 국립대학의 경우 대통령령과 학칙에 따라,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에 따라,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의 교원 징계사건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의 경우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50. 국립대학 교육공무원 조교의 복무 관련 문의



질의

국립대학 공무원 조교의 업무가 매주 토요일마다 상시적으로 있을 경우, 근무일을 조정하여 정상근무일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지정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회신

2020-09-02(고등교육정책과)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주말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소속 대학 복무관련 담당자와 문의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1. 타 대학 소속 비전임교원의 국립대 강사료 차등 지급 관련 문의

질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을 이유로 다른 대학의 초빙교원을 비전임강사로 분류하여 전임강사와 비전임강사의 강의료를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아닌가요?

회신 2019-12-20(고등교육정책과)

- 전임/비전임 구분과 관련하여, 다른 직업(자영업 포함) 없이 시간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전임으로 분류하고, 단순히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대학에 기 안내한 바 있으며, '20년 국립대학 강의료 예산지원 시 전임/비전임 구분 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52. 강사 재임용 절차에 대한 문의

질의 1년 연구년 교원의 대체강사가 의원면직('20.3.1.예정)한 경우, 의원면직한 강사를 대체하기 위해 임용한 강사에게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하나요?

회신 2020-01-09(고등교육정책과)

- 의원면직한 강사를 대체하여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강사를 임용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8 제4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할 수 있습니다.



53. 국립대학교 강사로 차별 문의



질의

2020년 강사 채용공고를 보면 아직도 일부 국립대학에서는 전업, 비전업 강사 간 임금차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금차별을 유지하여 운영하는 것이 옹인되는 것인가요?



회신

2020-01-09(고등교육정책과)

- 교육부는 국립대 전업·비전업 강사 강의료 차별 시정을 위하여 '20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전업·비전업 강사 구분 없이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4. 전공대학 졸업 이후, 대학 출강(강사) 가능 여부



질의

전공대학(전문학사)을 졸업하고, 사이버평생교육원의 인터넷 강의를 수료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대학 강사로 임용될 수 있나요?



회신

2020-05-07(고등교육정책과)

- 「평생교육법」 제34조(전공대학) 및 제33조(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공개임용을 거쳐 대학 강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55. 국립대학에서 임용한 강사를 교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국립대학에서 임용한 강사는 그 대학의 교직원으로 볼 수 있나요?

회신 2020-08-03(고등교육정책과)

- 「고등교육법(강사법)」 제14조에 따라 강사는 고등교육법의 교원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동법 제14조의2에 따라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6. 대학 강사 임용 시기에 대한 문의

질의 강사의 임용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 의결과 이사장의 임용이 필요하여, 적합자 또는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할 경우에 9.1일 이후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재공고 할 경우 학기 개시일 이후 공개임용 절차가 완료될 것이 명확할 경우 학과장의 추천으로 강사를 임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회신 2020-08-27(고등교육정책과)

- 강사임용 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강사 임용 절차 및 이사회 소집 절차 등을 감안하여 강사 임용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의 수업권 등을 고려하여 학기 시작 전 강사 임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학기 개시 이후 계약 체결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용계약 체결 전에는 강사의 강의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 또한 강사의 지원자(적합자)가 없을 경우, 아래의 단계로 임용하여야 합니다.
 - ①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하여 재공고
 - ② 학기 개시 전 30일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자가 포기한 경우를 준용하여 해당과목 강의가 가능한 기 임용된 강사에게 주당 9시간 범위 내에서 강의를 부여
 - ③ 학칙(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용 가능하나, 인사 위원회 검증 등 임용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57. 강사법에 따른 과목 배정에 대한 문의

질의 전임교원이 A반의 '가', '나'과목을, 강사가 B반의 '가', '나'과목을 교수하고 있을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전임교원이 '가'과목(A, B반 모두), 강사가 '나'과목(A, B반 모두)을 교수하는 것으로 변경할 때 강사법 위반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20-08-28(고등교육정책과)

- 「고등교육법(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교수 과목 배정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소청심사 대상이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8. 전문대학교 교원의 연봉 책정에 대한 문의

질의 성과연봉제 실시로 첫째 성과에 따라 기본급에 반영을 받았는데 규정을 개정하여 경과조치를 통해 기존의 성과에 반영된 기본급을 대학에서 제시한 호봉 기본급으로 연봉을 제시해도 되나요?

회신 2020-4-3(전문대학정책과)

-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며, 업적 및 성과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교육·연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정하되 각 대학 및 학문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의 변경은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 계약조건의 변경은 충분한 사정변경이 있고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사가 아닌 쌍방의 합의에 의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제외한 계약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59. 전문대학 전임조교수의 호봉 확정 기준 문의

질의 공립전문대학 전임조교수로 임용되어 임용전 경력을 호봉합산하려고 합니다. 초빙교원의 경력은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1] 교육공무원의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적용기준에서 어느 항목에 적용해야 하나요?

회신 2020-9-15(전문대학정책과)

- 「교육공무원 호봉확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초빙교원의 경력은 [별표1]의 “3. 유사경력 > 가. 강사 등 경력 > 3) 대학 시간강사 경력(5~10할)”으로 적용하여 임용전 경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호봉 확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60. 직원의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질의 저는 대학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인사담당 팀장에게 문의하였으나, 직원은 대학원에 진학을 못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진학하려는 박사 전공은 직무와 직결되며, 등록금도 자부담이고(대학차원의 지원금 한 푼도 없음) 그리고 수업도 주말에만 있습니다. 이런 답변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회신 2020-9-15(전문대학정책과)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계약 당사자 끼리 체결한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보이며, 만약 사용자(학교법인)가 계약조건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을 근로자(사무직원)에게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61. 겸임교수의 신분 및 출마 가능 여부



질의

겸임교수가 대학교원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총선에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 겸임교수직도 미리 사퇴해야 하나요?



회신

2020-02-21(전문대학정책과)

- 우선,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겸임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이나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당법」 제2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대학의 겸임교수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대학(법인)의 정관, 계약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민원인이 소속된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입제도



62.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 관련 문의



질의

코로나-19가 갑자기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안전상의 문제로 해당 국가에 체류할 수 없는데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회신

2020-07-30(대입정책과)

-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이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지원 자격 충족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을 요청하고, 추가로 지난 6월 각 대학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을 통해 해외체류기간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 교육부 권고사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 수업 이수내용과 증빙사항에 따라 대학은 체류국가와 관계없이 재학기간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외체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입국 금지 등 예외인정 사유를 대학에 증빙하는 경우 증빙내용에 대한 대학의 판단에 따라 국내 체류기간을 국외체류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세부 지원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자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진학을 희망하시는 대학의 입학처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대한 문의



질의

○○도 ○○시에 소재한 ○○고등학교가 농어촌 특별전형에 해당되는 학교인가요?



회신

2020-11-11(대입정책과)

- 농어촌 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가목에 따라 해당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학생에게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고등학교의 졸업생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일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4. 대입전형료 환불 기준 관련 문의

 질의 대학 입학 전형료 환불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 2020-09-21(대입정책과)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라 전년도 입학전형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하고,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라 잔액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은 입학전형료 반환사유 및 금액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65. 대학별고사 방역 관리 방안 문의

질의 대학별로 진행되는 면접, 논술 고사에 많은 학생들이 응시할 텐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방역대책은 무엇인가요?

회신 2020-12-02(대입정책과)

- 교육부는 면접·논술 등 각 대학의 대학별고사에 대비해 지난 8월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통해 전형의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형의 경우 비대면으로 전형을 운영하고, 대면으로 대입전형을 운영할 경우에는 응시자를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대학별고사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을 각 대학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권역별 별도고사장 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수험생의 응시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당 고사를 운영하는 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6. 현 중학1학년 학생들의 대입제도 전망 문의

질의 현재 중학교1학년 아이들은 수능을 보는 것인가요? 그에 대한 자세한 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회신 2019-12-05(대입정책과)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 형식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최소 4년 전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까지 발표한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 수능 당일 시험지 회수 건의



질의

수능 당일 수능 문제지를 학생들이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해 시험지를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지 회수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2020-11-04(대입정책과)

- 자신이 응시한 수능 시험지를 가져갈 수 있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채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확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면 혹시라도 학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막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예컨대, 짝수형을 응시해야할 수험생이 감독관의 배부 실수로 인해 홀수형을 배부 받아 응시하였을 경우, 채점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학생이 응시한 유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회수된 문제지가 확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 또한 수험번호를 답안지에 잘못 기재하여 동일 수험번호 응시생이 2명 이상인 경우, 결시여부 확인, 부정행위 확인 등을 위해 시험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의견은 공감하나 수능시험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귀하의 제안을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정시 지원 가능 횟수 조정 건의

 **질의** 각 학년도별 정시 지원 가능 횟수를 현행 3회에서 6회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회신** 2020-06-26(대입정책과)

-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등 대입전형과 관련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까지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민원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즉각적인 수용이 불가하며, 정책연구, 관계자 의견수렴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정책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9. EBS 수능교재 저작권 관리 필요성에 대한 건의

 **질의** EBS 수능교재 문항 도용 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진행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신** 2020-06-17(이러닝과)

-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상황에 대하여 EBS 수능교재개발부에 전달하였고, EBS 담당부서에서 저작권 및 연계교재의 재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저작권 관련 소송 및 대응 처리 등은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인 EBS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려 드립니다.

전화민원



70. 수시모집에 복수의 대학에 합격 시 예치금 납부 관련 문의



질의

수시모집 합격 후 예치금을 여러 군데 납부하면 안 되나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합니다(이중등록 금지). 또한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일반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사이버대학·전공대학(각종 학교) 간에는 이중등록 금지를 적용하지 않지만 ‘대학 자체 학칙’에 ‘이중등록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학 홈페이지에서 학칙을 확인하거나 대학에 문의해야 합니다.

71. 대입전형 시 원서접수 취소 기준 문의

질의 수시에서 6회를 초과하여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해서 원서를 접수한 경우, 위반 검색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게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한 접수에 대해 학생에게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회 지원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됩니다(순서상 6회 지원 초과한 후순위 대학에 합격하여 등록 후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향후 복수 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됩니다).
-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에 입력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창구 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이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한 시각,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에 우편이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초과 지원 제한을 하게 됩니다.

72. 대입전형 시 원서접수 취소 가능 여부 문의

질의 대학지원 원서접수 후 취소가 가능하나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 접수되어 수험번호가 생성된 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고교, 주소 등 기본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정이 가능하므로 원서접수 사이트 또는 지원 대학 입학처에 문의하면 됩니다.

73. 대학입학전형 시 지원방법에서의 유의사항 문의

질의 대학입학지원방법에서 수시모집 6회 초과 지원 위반 이외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나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 수시 모집 6회 초과 이외 위반사항 점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 이중 납부
-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정시모집 동일 군 복수 지원(전문대, 산업대는 해당 없으며, 동일 군 접수 중 후순위 접수 대학이 취소 대학에 해당됨)
- 일반대학 정시모집에 등록한 상태에서 일반대학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전문대, 산업대 정시모집 등록자는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추가모집 기간 전에 일반대학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최종 이중등록

74. 수능시험 당일 신분증 및 수험표 지참 필요에 대한 문의

질의 수능시험 보러갈 때 수험표와 신분증 둘 다 가져가야 하나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수험표 분실 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5. 수능시험 응시할 시 신분증 종류에 대한 문의

질의 수능 시험 시 본인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지참해야 하는 신분증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 있습니다.

76. 2022학년도 수능시험의 응시영역 및 선택과목 변동 사항 문의

질의 2022학년도 수능능력시험은 현행과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수능 응시 영역 및 선택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하며 한국사 이외의 영역은 선택하여 응시합니다.
-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과 함께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합니다.

* (국어) 독서, 문학 / (수학) 수학Ⅰ, 수학Ⅱ

** (국어)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 탐구 영역은 수험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합니다.
 -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직업탐구영역은 2과목 응시 시, 전문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계열별 선택과목*(5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고, 1과목 응시 시, 계열별 선택과목(5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의 기초, 인간 발달



77. 대입전형 시 체육특기자 선발방식 개편 관련 문의



질의

대입에서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이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0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교과 성적, 출결,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2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21.8)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V

평생교육





1. 독서실 교습비 반환기준 관련 문의



질의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 관련 독서실의 교습비 반환기준에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반환금액을 산정하게 되어있으나, 포기한 날까지 포함한 것이 규정에 맞는 건가요?



회신

2020-7-13(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3항에 의거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서 독서실의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금액의 계산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로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금액의 계산은 민원인께서 독서실 사용을 포기로 요청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학원 교습비 반환에 관한 합의 관련 문의



질의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규정과 관련하여 학원과 학생사이에 별도로 교습비 반환에 관한 합의가 적법한 건가요?



회신

2020-1-23(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은 [별표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다른 합의의 경우에는 학원 수강생(학습자)에게 유리하게 합의된 경우에만 허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제한 관련 문의



질의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에서 학원이 4층, 유해업소가 3층에 있는 경우에, 「학원법」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5항 제2호의 수평거리 6M 거리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신

2020-3-2(평생학습정책과)

- ‘학원과 유해업소의 거리 측정’은 유해업소를 4층으로 수직 이동한 것으로 가정하여 유해업소와 학원 간의 수평거리가 6m 밖에 있는 경우에 설립·운영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원 등록에 대한 권한은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있으며 현장실사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립대 강사 학원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질의 국립대 강사로 재직 중입니다. 학원 사업을 병행하고 싶은데, 강사 신분을 유지하면서 학원 사업자로 동시에 등록하여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회신 2019-12-04(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제3조에 따라 대학의 강사의 경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학의 강사가 「학원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학원을 개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

5. 보습학원 유아대상 교습과정 운영 가능 여부

질의 보습학원에서 유치부(유아: 만3~7세) 교습과정 등록 및 교습행위가 가능한가요?

회신 2019-12-10(평생학습정책과)

- 현행, 「학원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유아,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2]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분류하면서 교습과목만 또는 대상을 포함한 교습과목으로 정의하고 있어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을 초·중·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교습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아 대상 교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6. 폐업 교습소 직권말소 경우에 대한 문의



질의

학원 및 교습소의 직권말소가 가능한 경우는 법률이 신설(2017.12.19.)된 이후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한지요? 아니면 법률 신설 이전에 폐업 신고한 학원 및 교습소에게도 이 법률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9-12-31(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 제11항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폐소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 동 조항이 시행된 2017.12.19.일 이전에 폐업 신고된 교습소에도 해당 조항은 적용이 가능하므로 폐업신고에 따른 직권말소 대상이 됨을 안내 드립니다.



7. 학원의 등록 가능한 교습과정 문의



질의

법학과 관련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사설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

2020-01-10(평생학습정책과)

- 학원의 교습과정은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2항에 의거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2] 학원의 교습과정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 인문사회, 자연 > 인문사회, 자연 >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의 교습과정이 있습니다.
- 말씀하시는 ‘법학 관련 내용’은 이와 유사한 교습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자세한 사항은 「학원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교육청에서 학원 등록을 담당하고 있어 학원을 설립하시고자 하는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교습소 교습자 변경 관련 근거 문의

질의 「학원법」 상에서 교습소의 교습자(운영자)를 변경하려면, 교습소를 폐소 후 그 장소에 새로 교습소를 설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습자의 인적사항의 범위에 현재 운영 중인 교습자가 아닌, 인수인계를 받은 다른 교습자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0-10-05(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교습자의 인적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습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및 변경의 권한이 있는 소재지 교육지원청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 학원 강사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질의 내국인으로 외국 대학 휴학 중입니다. 학원 강사등록이 가능할까요? 등록이 가능하다면 성적증명서나 수료증(수료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야하는지요?

회신 2020-11-05(평생학습정책과)

- 「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2호에 의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외국 대학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내국인 강사 채용 관련 서류는 학원 등록 권한이 있는 각 시·도 교육청의 조례 및 규칙, 관련 지침에 의해 규정하고 있고, 학원 등록 관련 권한은 소재지 교육지원청에 있어 학원 강사 채용 및 관련서류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민원



10.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의 평생교육 바우처 잔액 확인 가능 여부



질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바우처 잔액 확인이 가능한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연간 35만원)은 현금 지급이 아닌 전자바우처 충전 형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전자바우처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충전되면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 희망카드)을 사용하여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충전 금액 내 수강료를 결제 하실 수 있습니다.

11.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결제 금액의 부분 취소 가능 여부



질의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평생교육 희망카드) 결제 금액에서 부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 바우처는 체크카드(평생교육 희망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는 형태로, 결제한 금액은 부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제 취소 시 정부지원금과 개인부담금(개인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을 합한 전체 금액을 취소(승인취소 또는 매입취소)하셔야 합니다.

직업교육



12.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즉시 대학 진학 가능 여부



질의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즉시 대학 진학이 가능한가요?



회신

2020-01-05(중등직업교육정책과)

-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국가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입학생 모집 단계부터 취업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 또한 산업체와 연계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실험실습 등을 통해 졸업생의 우선 취업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를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교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과 함께 개교 후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기숙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마이스터고가 선취업이라는 특수목적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 마이스터고 학생이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법적으로 대학 진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저성장 등으로 인한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경우 대학 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폭넓게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이스터고 학생 중 대학진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선취업-후학습’의 일환으로 마련된 ‘재직자 특별전형’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체에 3년 이상 재직할 경우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은 ‘재직자 특별전형’ 응시가 가능하며 기타 대입전형에 비해 훨씬 수월하게 대학진학이 가능하고 등록금 전액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13.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한 문의



질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급에 대한 절차 및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20-03-18(중등직업교육정책과)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학생) 신청 → ② (학교) 신청자의 서류확인 및 추천 → ③ (한국장학재단) 적격여부 심사 및 심사통과 통보 → ④ (학생) 이행보증보험 가입 → ⑤ (한국장학재단)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장려금 지급
 -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참조
- 다만, 상기 절차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② (학교) 신청자의 서류 확인과 추천, ③ (한국장학재단) 적격여부 심사, ④ (학생)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개인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4.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특수목적고의 정의



질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뜻의 정의와 각각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회신

2019-12-18(중등직업교육정책과)

- 고등학교 유형에는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가 있습니다.
- 특성화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 그 중,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함)를 흔히 마이스터고등학교라고 부릅니다. 이는 특수목적고 유형에 마이스터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아울러 특수목적고(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마이스터고는 대학진학 일변도의 교육현실을 극복하고 직업 교육 본연의 목적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학교이며 특성화고 보다 더 취업에 중점을 둔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보다 먼저 신입생 모집을 진행하고 면접을 통해 취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며, 산업체와 직접 연계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전화민원



15. 취업연계 장려금



질의

취업연계 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중등직업교육정책과)

- 국내 직업계 고등학교(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반) 및 일반 고등학교 직업교육 위탁과정 3학년 재학생(졸업예정자)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재직)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일시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의무종사 6개월 필수)

※ 장려금 신청은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및 취업(예정)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예산 초과 시 순위 요건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VI 기타



기 타



1. 미래사회 시스템 개선 관련 문의



질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주택 등 사회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회신

2020-07-03(기획담당관)

-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2019년 4월 범정부 인구정책 TF에 참여하여 같은 해 11월 제1차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연구 등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유사 민원 확인 기능 관련 문의



질의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할 경우 유사한 다른 민원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0-07-16(반부패청렴담당관)

-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 시 ‘국민참여·민원 > 민원신청 > 자주묻는 질문(FAQ)’ 메뉴를 이용하시면 다른 민원인 분들께서 신청하신 민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영문 성적증명서 발급 건의



질의

홈에듀를 통해 초·중등 증명서류를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20-04-10(반부패청렴담당관)

- 교육부는 귀하의 경우와 같은 불편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학교 영문성적증명서 서식개발 및 사업자 선정,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나이스(NEIS)에서 영문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기능 개선이 완료되면 나이스 홈에듀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중학교 영문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며(교육기관 방문발급도 가능), 외교부 아포스티유(www.apostille.go.kr) 연계를 통해 개인적으로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향후에는 초등학교 영문성적증명서 또한 홈에듀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사회관계장관회의 관련 질의

 **질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개념 및 역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0-01-22(사회정책총괄담당관)

-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 사회 및 문화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주요 정책·중장기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협의, 조정하여 교육, 사회 및 문화 분야 발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조실 등의 정부 부처에서 주로 참석합니다. 다만, 안전에 따라 법무부,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등의 관련 부처도 참석하고 있습니다(「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제5조, 구성원).
- 사회관계장관회의는 교육,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국민께서 제안해주시는 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정책 방안을 발굴하여 안전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대한 질의



질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중 P19, P64 피·가해자 긴급조치(피·가해자 분리(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 수업배제, 업무배제) 사항)

(질문 1) 이 사항이 교사와 학생 간의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교사와 교사간의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만약 교사간도 적용 된다면 사건이 생긴 즉시인지, 인지한 즉시인지, 피해자가 요구한 즉시인지 적용시점이 궁금합니다.

(질문 3) 분리조치를 한다면 어느 장소에 분리해야 하는지요? 같은 층 옆옆방에 분리하여 수시로 드나드는 게 용인되는지, 다른 건물로 분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4) 분리조치 후에도 가해자가 계속 드나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

2020-07-30(양성평등정책담당관)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중 피·가해자 긴급조치(피·가해자 분리(가해자가 교직원인 경우 수업배제, 업무배제) 사항)에 대하여

(질문 1) 이 사항이 교사와 학생 간의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교사와 교사간의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답변 1) 피·가해자 분리조치는 피·가해자의 직책, 신분 등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신 대로 동 매뉴얼 64쪽, 69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만약 교사간도 적용 된다면 사건이 생긴 즉시인지, 인지한 즉시인지, 피해자가 요구한 즉시인지 적용시점?

(답변 2) 분리조치를 이행하는 주체(학교장)가 사건을 인지(접수)한 즉시 적용하되 이는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므로 사안에 따라 피해 교직원의 의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질문 3) 분리조치를 한다면 어느 장소에 분리해야하는지요?

(답변 3) 분리조치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한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일반적으로 다른 건물, 다른 층 등 출퇴근(등하교) 및 업무환경상 동선이 겹치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분리조치 후에도 가해자가 계속 드나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4) 가해자가 계속 드나들어 피해자와 대면하게 된다면 이는 분리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학교 여건에 따라 적절한 장소와 방법을 통해 분리조치를 적극 이행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아울러 학교에서 사안처리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관할 시·도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권장 드리며, 교육부에서 전문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초·중·고교 사안처리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불임과 같이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학교 자체적인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청하시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6.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

질의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행정정보 공표 대상인 바, 기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 주세요.

회신 2020-01-23(운영지원과)

- 교육부는 「교육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7. 교육부 공무원 채용 일정 문의

질의 2020년 올해 교육부 공무원 채용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20-08-05(운영지원과)

- 추후 공고될 채용시험 등은 교육부 홈페이지 혹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8.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가능 여부 문의



질의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이 가능한가요?



회신

2020-11-26(운영지원과)

-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도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공무원 임용규칙」 제9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시간제근무를 희망하는 전일제공무원이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34호 서식 「시간선택제근무 변경 신청서」에 주당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신청하면, 임용권자가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한 경우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9. 동경한국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문의



질의

일본 동경한국학교 재학생 학부모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일본 내 현지학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신

2020-11-4(재외동포교육담당관)

- 동경한국학교는 지난 10월 19일 오전에 학교 내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계획’에 따라 비상감염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주간 원격수업 전환을 결정하였으며, 동 상황은 교육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 원격수업 운영 기간에는 코로나-19 확진 학부모의 자녀와 밀접접촉 학생 등의 동선을 파악하고 교내 방역을 실시하며 등교수업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더불어 동경한국학교를 통해 확인해 본 바, 다수의 동경한국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가 국내의 관점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이에 맞춰 사안을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 왔습니다.
- 교육부는 동경한국학교가 안전에 유의하며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수업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학생 전입학에 대한 학칙 개정 관련 문의

질의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서 결원 발생 시에도 5~6학년은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학칙 개정하였는데, 이것이 적합한가요? 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에서는 왜 수업료가 발생하나요?

회신 2019-12-20(재외동포교육담당관)

- 재외한국학교의 전입학 관련 사항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해당 한국학교에서 학칙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의 경우, 초등의 학급 정원은 36명, 중학교의 학급 정원은 33명으로, 학칙 상 학급 당 정원 유지 등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재외한국학교 지원과 관련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11. 학교 가정환경 조사 폐지 건의

질의 부모의 학력, 직업 등을 기재하도록 강요하는 가정환경 조사를 없애주세요.

회신 2020-08-06(교육정보화과)

- 학교 가정환경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과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서식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2. 공공 학습관리 시스템 화상수업 관련 건의



질의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화상수업(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의 기능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20-11-24(코로나-19대응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

- 12월 7일(월)부터 공공 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기능을 시범 개통하여 학교 수업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화상수업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화상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생별 화상수업 입·퇴장 시간이 학습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며, 실시간 조·종례 개설 기능 문서 공유, 화면 필기, 수업참여 확인, 모둠토의, 문제풀이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교육부는 시범 개통 기간 중 운영 기관들과 함께 시스템의 안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일부 기능을 추가하여 2020년 2월 말에 공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 1학기부터는 더욱 안정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준 높은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3. 교원소청 청구 대상 여부



질의

대학교 LINC+ 사업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원의 부당 인사발령도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회신

2020-08-14(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소청심사 청구인 적격 및 소청심사 대상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해당 사항은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실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을 말합니다.
- 구체적으로 교원이란 유치원의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유아교육법」 제20조)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1조) 그리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고등교육법」 제14조)를 말합니다.
- 또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려면 ‘교원으로서의 지위’에서 받은 ‘징계처분 내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여야 하며, 법원은 “소청심사대상인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휴직, 강임, 면직 등과 같은 신분·인사상의 불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법 2009. 9. 2. 선고 2009구합13764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시험 출제에 대한 문의



질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시험 문항의 난이도와 난이도 조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신

2020-10-28(국사편찬위원회 역사진흥실)

- 난이도 조정 문제는 본 출제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 출제팀은 매 시험마다 적절한 난이도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7만~10만 명이나 되는 응시자의 생각에 맞추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시험팀은 앞으로도 난이도를 적절히 조정하는 데 더욱 유의하고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화 시험은 기존 고급 시험보다 약간 쉽게 출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출제팀에서는 매 시험마다 출제 경향, 난이도 등에 대한 외부 의견을 철저히 분석해 앞으로 더욱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난이도는 출제위원 예상 정답률과 실제 정답률을 대조해 편차가 큰 문제는 정밀하게 검토해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후 출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출제팀은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항을 출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 특수교육 관련 자료 관련 문의



질의

특수교육 관련 자료(간행물, 교육프로그램,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소록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20-10-13(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 국립특수교육원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한 간행물

우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현장특수교육」이 있으며, 우리 원 홈페이지(www.nise.go.kr) NISE발간물 - 간행물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립특수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 추천

우리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nise.go.kr)의 평생배움세상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소록 요청

우리 원 홈페이지(www.nise.go.kr) NISE발간물 - 특수교육통계 - 특수교육통계조사의 자료 중 2020년 특수교육통계 파일(PDF)의 186~1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행정법 또는 행안부 관련 과목을 K-MOOC 강좌 확대



질의

행정법 또는 행안부 관련 과목을 K-MOOC 강좌에 확대해주세요.



회신

2020-09-08(미래교육기획과)

- K-MOOC는 2015.10월 서비스 도입 이후, 매년 신규강좌 선정 공고 등을 통해 인문, 사회(법률, 경영), 공학, 자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총 745개, 2019년 기준).
-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유망강좌 개발을 확대하고 해외 MOOC와 협력하여 글로벌 우수강좌를 제공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7. 인터넷 연결 건의



질의

제가 살고 있는 00시 00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2~3백m정도 떨어진 곳인데 인터넷연결에 과도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번 온라인 개학 시에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신

2020-04-10(이러닝과)

-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신학기 온라인 개학이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원격수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원격교육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 관련 인터넷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 e학습터 내 기능 개선 요청



질의

e학습터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온라인교육에 이용하는 플랫폼입니다. seek 기능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되돌리기만 구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수업 강의 도중에 되돌아가기 기능 추가를 요청합니다.



회신

2020-09-29(이러닝과)

- 교육부는 공공플랫폼을 활용한 원격수업 운영 과정에서의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여 성능,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고도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주요 기능 개선 내용에는 화상강의 솔루션 연계, 강좌관리 기능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요청하신 영상 시청 중간 단계에서 뒤로 가기 기능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e학습터에 반영되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 EBS 중학 프리미엄 콘텐츠 무료 이용 범위 확대



질의

코로나-19 사태로 EBS 중학 프리미엄 강화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 개인이 듣고 싶은 프리미엄 강화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개설은 선생님들만이 할 수 있고, 중학생은 개설 할 수 없어서 듣고 싶은 강화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개인별로 듣고 싶은 강화를 모두 듣게 하기에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듣게 할 수 있게 EBS 중학에서 프리미엄 강화를 무상으로 듣게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회신

2020-09-16(이러닝과)

-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원격수업 운영 지원을 위하여 공공플랫폼 운영 및 다양한 콘텐츠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EBS의 자체 유료 콘텐츠인 중학 프리미엄 강화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 EBS 등과 협의하여 이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사 및 학생이 12월 31일까지 온라인클래스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EBS와 협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온라인클래스 외에서의 중학 프리미엄 강의 사용은 EBS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로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해드리며,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개인 무상 이용 확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EBS 등과 함께 더욱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 EBS 초등 1,2학년 방송프로그램 오후 시간대 편성 요청



질의

학교/학급 내 학생밀도를 줄이기 위해 한 학급 학생을 반 씩 나누어 등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학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학년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1,2학년의 경우에는 현재 온라인 수업을 EBS 교육방송으로 이용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시키기 위해 가급적 TV로 시청하도록 지도하고 있어 등교수업을 고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학기에는 대면등교가 주 1~2회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수업은 현재처럼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 오전 시간에 한 학년 중 반 수의 친구들이 등교하고 나면 그 날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은 오후에라도 들을 수 있게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오후시간에 1/2학년 EBS 수업이 재방송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실 수 있는지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논의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2020-05-25(이러닝과)

-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스마트기기 활용이 쉽지 않은 초등1,2학년의 원격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서 기반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하고 있습니다.
- 당일 방송된 프로그램의 경우 12시 이후에 EBS 초등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등교,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모든 경우의 수에 맞게 지원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EBS 채널 및 프로그램 편성에 관한 사항은 EBS의 소관이라는 점 또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2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 침해 여부 의견 요청



질의

유튜브에 작년 9월부터 수학 공부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가장 기본적인 수학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영상을 제작하여 올렸습니다.

- 올해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수업이 시작되면서 저의 채널을 통해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댓글을 누가 달아주셔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합니다.



회신

2020-06-08(이러닝과)

- 「저작권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제작, 제공할 경우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접근제한 조치(교사와 학생이 로그인하여 이용해야 함), 경고문구 명시(수업목적 외 활용시 저작권 침해) 등을 지켜셔야 합니다.
- 유튜 * 와 네이 * 밴 * 등에 직접 수학교과서를 활용한 영상을 제작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탑재하였다면 (1) 수업목적인지 확인 (2) 교사와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접근 제한(로그인 접속 또는 일반이용자 비공개)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3) 수업목적 외에 사용 불가 문구 명시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원격수업 시 저작권 침해 여부



질의

지역 교육청별이 아닌 전국 학교에 저작권 활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강구하고, 저작권 침해 없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방침이 필요하며, 교사가 원활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소프트웨어를 전체 구매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회신

2020-04-19(이러닝과)

- 「저작권법」 제25조제2항에 의거하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에, 수업목적을 명확히 하는 접근제한 및 복제방지 조치(학생과 교사가 로그인으로 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경고 문구(예시 : 본 자료를 수업목적 외에 제공,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표기(예시 : 00출판사 00도서 00쪽) 등이 명시되면 개인 저작물 등을 사전허락이나 보상금 지급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음원 활용 및 교과용도서, 출판사 저작물, 관련 소프트웨어 학교운영비 구매 지원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3. e학습터 이용에 따른 기능개선 요청



질의

코로나-19로 아이들이 e-학습터 제안을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시스템이지만 순위가 나오는 것은 요즘 교육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을 때의 장점은 자기 속도에 맞춰서 느리게라도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e-학습터 에서 순위가 공개되면 아이들이 괜한 순위 경쟁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만 돌려서 순위를 높이려는 행동도 나오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들은 아이들에게는 포인트를 준다거나 하는 시스템으로 동기부여를 하시고 순위는 삭제되고 자기 순위 정도는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2020-04-19(이러닝과)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정에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건강 관리, 학습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용하신 ‘e학습터’에서 학생들이 순위가 나오면 과도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측면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이 가정에서 혼자 온라인 학습을 수행할 때 지속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순위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 제안 주셨던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현장 교원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온라인 원격수업 로그인 시간 규정 관련 건의



질의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원격수업 중입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원격수업이 학습기 업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비해 경쟁력이 있나요? 온라인 개학도 개학이라면 그에 합당한 학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회신

2020-06-10(이러닝과)

- 교육부는 원격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안내('20.4.7.)를 통해 출결 확인은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실시하되, 수업유형에 따라 7일 내 최종 확인하도록 했으며, 교과교사가 실시간 또는 사후 출석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차시별로 출결 보조장부(출석부) 또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시도·학교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원격수업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원격수업의 유형에 따라 출결 확인은 7일 내 최종 확인하도록 했으나, 학교별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세부 운영 방법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또한, 교육부에서는 원격수업시 공공 플랫폼의 안정과 더불어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e학습터 콘텐츠(5,500여건)에 유관기관과 민간의 콘텐츠(4,600여건)를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에게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 온라인개학 교사 초상권 보호 건의



질의

교사의 초상권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나라에서 하란다고 다들 인터넷에 얼굴을 비춰서 수업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양한 방법의 온라인 개학 먼저 마련하시고 공문도 좀 미리미리 보내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지 소통이 무조건 중요하다면서 온라인 활용을 무작정 도입하는 것은 현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나라의 교육을 함께 이끌어가는 교사들도 존중 부탁드립니다.



회신

2020-04-28(원격교육준비점검팀)

- 우선, 교육부의 갑작스러운 원격교육 시행으로 교사의 개인 교육컨텐츠 제작에 따른 업무 과중을 느끼게 해드린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 먼저,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강도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일정 운영과 등교수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개학 연기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방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을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교육부는 수업 영상 악용 등으로 교육활동이 침해당한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도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교원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등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화민원



26. 해외 학력인정 대학 목록 열람 요청



질의

영국 등 해외 학력 인정 대학교 목록이 궁금합니다.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육국제화담당관)

- 안녕하세요. 교육국제화담당관실입니다.
- 민원인께서는 해외 소재 학력인정 대학 목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회의 한국학위정보센터(Korea Academic Recognition Information Center)에서 국내·외 고등교육정보(학위·학사제도, 교육과정, 인증체계, 고등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여부 등)를 제공하고 있으니 동 기관 홈페이지(<http://www.kari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입학 시 소지해야 할 비자 종류 질의



질의

외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 대학에 유학을 와서 국내 학위를 취득하고 싶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려면 어떤 비자를 소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20년 전화문의(교육국제화담당관)

- 유학 희망자들은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한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 자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서 유학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필요한 비자 유형은 한국 대학에서의 수학과정(정규 학위과정, 어학과정, 한국문화연수 등)에 따라 다른데, 정규 학위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D-2비자를 받아야 하며, 비학위과정(어학연수, 문화연수, 산업연수 등)에 등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D-4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8. 문교부 주관의 주산 자격증 재발급 방법 질의



질의

1960년에 문교부에서 주관한 주산 자격증을 취득했었는데 지금 재발급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신

2020년 전화문의(평생학습정책과)

- 1982년 이전 국가에서 인정하는 단체로부터 취득한 합격증을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갱신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에서 인터넷신청으로 자격증을 갱신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자격증 신청은 인터넷신청만 가능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마이페이지-자격증신청 메뉴에서 로그인 후 스캔 받은 여권사진을 업로드 해야 하며 3,100원의 전자결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격증을 신청하시면 합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1~6개월) 신청자에게 재교부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다만, 문교부에서 시행한 주산, 부기, 타자는 '55년부터~'62년 12월 31일 시행 분까지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시행한 주산, 부기, 타자는 '72년부터~'81년 12월 31일 시행 분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사업평가단 02-2110-36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V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 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가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교부의 절차 및 접수·처리·교부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와 통지 등

제27조(처리결과와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절 법정민원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 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 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③ 조정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민원 관련 자료수집과 민원제도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459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3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② 법 제2조제3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패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이하 “민원편람”이라 한다)을 열람(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람에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2. 제5조에 따라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3. 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구술(口述)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의 통지
2.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3. 법령, 민원편람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접수기관”이라 한다)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민원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이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가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⑧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민원인이 소관 행정기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⑨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 데 걸린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19. 6. 4.>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①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행정기관은 민원문서를 이송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민원인은 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감독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

[제목개정 2019. 6. 4.]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민원 처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

-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 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한다.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민원심사관의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할 수 있다.

② 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개정 2016. 4. 26., 2017. 7. 26.〉

1. 삭제 〈2019. 6. 4.〉
 2. 위조·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추가비용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4절 법정민원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이 영 제6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의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의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회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민원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2. 개선 내용 및 실적
 3. 개선에 대한 완료시점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안을 통보한 경우
 2.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한 경우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서 심의·조정한 경우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법 제40조제2항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제도 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
5. 그 밖에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 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조정회의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①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6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조정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9조(확인·점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 요구 및 부당한 접수 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0조(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행정기관(농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의 장은 민원을 접수·교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2조, 제29조제1항,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0313호, 201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3] [행정안전부령 제121호, 2019.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3조(민원의 접수)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병무(兵務)·인감·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교부하는 민원 중 영 제12조제7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처리하면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팩스·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갈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주무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보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3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8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민원문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① 영 제2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독촉장)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21호, 2019.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시행 2020. 6. 10.] [교육부훈령 제335호, 2020.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교육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원관리부서”란 교육부와 관련한 민원의 상담·접수·분류·관리와 민원 관련 행정 및 제도에 관한 운영·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담당관·팀을 말한다.
5.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6. “민원상담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선상으로 민원실의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인의 정보보호) ① 민원을 관리 또는 처리하는 자(이하 ‘민원처리담당자 등’이라 한다.)는 민원의 처리 또는 이첩과정에서 알게된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사생활 또는 경영상·기술상·거래상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영 제3조에 따라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처리 담당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접수·처리 등

제5조(민원의 접수·분류·이송)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전화·방문·전자·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민원처리부서를 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내용이 타 기관 소관 사무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3. 소관 업무와의 유사성, 이전 처리 민원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의 핵심사항에 가장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부서의 장은 민원 배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민원을 배부받은 시각으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부서를 재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분류 요청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민원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민원관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전화에 의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전자민원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⑥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출하고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민원이 처리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14일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행정업무 등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고충민원 등 : 7일

제6조의2(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소관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민원관리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민원을 신설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처리기간·구비서류·수수료·서식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진단하고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조정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한차례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동일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2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최소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는 민원처리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회 이상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추가로 접수되는 동일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동일민원으로 종결처리 됨을 미리 안내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처리부서의 조정 등

제9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부 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부서 민원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하며, 영 제28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을 필요가 있을 경우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조정위원회)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3개실에 소속된 각 주무부서의 장, 혁신행정담당관, 민원관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각 1명 등 위원장 포함 총 8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① 영 제36조에 따른 사항과 민원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2개실(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소속된 주무부서 주무 서기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주무 서기관(사무관 또는 연구관), 민원관리부서의 민원담당 사무관 등 5명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경미한 사항이나 민원처리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실·국내 민원 조정 등) 실·국장 또는 민원심사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민원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속 실·국 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민원처리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소속 실·국 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민원심사관 또는 민원실무심의회가 민원처리부서로 지정·결정한 사항을 당해 부서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

제13조(민원처리결과의 통지)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를 완료한 경우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결과 통지는 민원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서신(국민신문고 상 ‘e-그린우편을 통한 서신통보’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민원처리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으로 평가한 경우 성실하게 추가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민원처리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등에 대해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민원 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민원상담센터 운영

제15조(민원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위해 민원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인원(전문상담사 등)을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상담 또는 업무안내
2.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매뉴얼을 포함한다)의 구축 및 관리
3. 전화민원 접수, 상담 동향 분석 및 관리
4. 국민신문고 민원의 접수·분류·상담 업무 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민원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신규 사업의 추진 및 변경 등으로 민원접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전문상담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전문상담사는 상담 주요 내용을 별도 기록하고, 자주 질문하는 사항이나 매뉴얼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담사례 작성시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센터 업무의 위탁)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교육·평가 등

제17조(처리민원 사후 관리)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만족도 및 개선사항, 친절 응대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등에 공헌한 직원의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민원처리담당자 성과보상)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분기별 민원처리 및 만족도 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다수민원처리 및 만족도 평가 우수 부서(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예방·치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335호, 2020. 6. 10.>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처리관련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제4조제3항, 제14조제2항 관련)

분야	조치 대상	조치 기준			
		징계	경고	주의	통보
민원 업무 처리 부적정	▶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 내용과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처리한 경우		○	○	
	▶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연간 3회 이상 '주의 및 통보' 처분을 받은 경우	○	○		
	▶ 기타 민원업무처리 과정에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5.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0. 8. 25] [대통령령 제30968호, 2020. 8.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8. 25.>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조정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

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6조·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할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입안의 기준과 제3항에 따른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제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중앙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 3의2. 제16조제4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제목개정 2020. 8. 25.]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0. 8. 2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 25.〉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 ②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 ③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25.>
-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 8. 25.>
- ④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25.>

④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에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른 면책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5.>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제2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특례) ① 이 영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3. 제13조 중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도교육감”으로 본다.
- ② 이 영을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 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5조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감사원”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으로 본다.
2.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3. 제13조 중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4.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5.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로 본다.
6.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7.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20. 8. 25.]

부칙 <제30968호, 202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감사원법」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인쇄일 : 2020년 12월

발행일 : 2020년 12월

발행처 :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우 30119)

인쇄처 : (사)성원근로장애인협회 드림사업단
(Tel. 044-863-2923)

본 사례집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국민참여·민원 → 민원신청 → 질의회신사례집)
사례집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044-203-61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